



파 주 시 의 회
제266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I. 결산 개요	1
1. 제안 경위	1
2. 예산 규모	1
II. 결산 총괄	3
1. 세입·세출 총괄	3
2. 세입·세출 처리	4
3. 총괄 검토	5
III. 세입 결산	6
1. 세입 총괄	6
2. 일반회계 세입	8
3. 특별회계 세입	16
【검토의견 - 세입 결산】	
(III-1) 본예산 세입 과소 추계	19
(III-2)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소극 편성	21
(III-3) 세입금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증가	23
(III-4)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소극 계상	26
(III-5)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페널티 확대	28
(III-6)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	31

IV. 세출 결산 35

1. 세출 총괄	35
2. 일반회계 세출	36
3. 특별회계 세출	38
4.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43
5. 예비비	44
6. 예산 이월	45

【검토의견 - 세출 결산】

(Ⅳ-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 관련 결산서류 기재	48
(Ⅳ-2)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 저조	50
(Ⅳ-3) 공기업특별회계 ‘시설투자적립금’ 운용	53
(Ⅳ-4)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악화	58
(Ⅳ-5) 일반회계 명시이월 증가 및 관리 강화	62
(Ⅳ-6) 일반회계 집행부진 사업	68
(Ⅳ-7)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증가	73
(Ⅳ-8) 계속비 의결 절차 및 조서 관리 미비	76
(Ⅳ-9)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급증	81

V. 기금 결산 83

1. 기금 총괄	83
2. 기금 운용	84

【검토의견 - 기금 결산】

(V-1) 사업비 집행률	85
(V-2) 사업비 편성 비율	87
(V-3)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89
(V-4)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
(V-5) 기금 수 현황	92

VI. 첨부 서류 94

1. 공유재산관리	94
2. 물품관리	95
3. 성인지 결산	96
4. 세입·세출외 현금	97

【검토의견 - 첨부 서류】

(VI-1) 물품 취득가액 등재의 적정성	98
(VI-2) 물품 증감현황 표 수량 산정 오류	100
(VI-3) 성인지 예산 집행 저조 및 성과지표 형식화	102

VII. 재무제표 106

1. 재무제표	106
2. 채권 현재액	108
3. 채무관리	108

【검토의견 - 재무제표】

(VII-1) 재정운영결과 순원가(적자) 전환	109
(VII-2) 요약재정상태표 표기 오류	11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개요 113

1. 제안 경위 113

II. 주요 내용 113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지출 사유의 타당성 및 시급성 114

(2) 예비비 지출결정 후 미집행 · 이월 116

< 작성 기준 >

- 이 검토보고는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파주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함.
- 검토 자료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이하 ‘통합결산서’)와 그 첨부서류 23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로 작성·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이하 ‘공기업 결산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로 보완함.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 통합결산서의 확정치를 우선하고, 그 차이와 사유는 해당 항목에 각주로 표기함.
- 금액은 표에서 숫자로, 서술에서 억·만원으로 표기하고 표의 단위는 각 표에 병기함.
 - 단위와 절사는 의안의 규모에 따라 달리함. 결산승인안은 표·서술 모두 백만원 미만을 절사(표는 백만원 단위)하되, 1억원 미만 금액의 서술은 만원 미만을 절사하며, 기재 금액이 대부분 1억원 미만인 표는 천원 단위로 함.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표를 천원 단위로 하고 서술은 만원 미만을 절사함.
 - 절사에 따라 합계·차감 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음수는 △로 표기함. 모든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절사하여 표기하되 구성비는 반올림함(계 100.0%).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서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이월액 202억 1,400만원이 통합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이 결산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집행부가 위원회 회부 전에 결산서를 정정하였으며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도 정정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시 제출되었음. 이 검토보고의 이월액·집행잔액·불용률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 수치는 모두 정정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경위와 후속 검토사항은 검토의견 IV-1 참조).
-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함.

파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I. 결산 개요

1. 제안 경위

「파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예산 규모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 8,690억 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7%, 당해연도 본예산 대비 33.2%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3% 감소하여, 예산 규모의 증가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비롯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2,869,005	2,392,032	476,973	2,590,754	2,092,343	498,410	278,251	299,689	△21,437

- 본예산 2조 1,527억 5,400만원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예산을 거쳐 최종 2조 6,917억 600만원으로 25.0%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제3회 추경 증액분 2,965억 4,900만원이 연중 최대 규모임.

[세입·세출 예산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	본예산(A)	예산 증감액(B)						최종예산 (C=A+B)	변동비율 (B/A)
		계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제3회추경	제4회추경	간주예산 (‘25.12.31)		
계	2,152,754	538,949	51,993	100,237	296,549	88,116	2,054	2,691,706	25.0%
일반회계	1,774,080	462,039	51,993	96,949	233,708	77,635	1,754	2,236,121	26.0%
특별회계	378,673	76,910	-	3,288	62,841	10,481	300	455,585	20.3%

Ⅱ. 결산 총괄

1. 세입·세출 총괄

- 예산현액 2조 8,690억 500만원은 본예산에 추경 증액 조정분과 간주처리분, 전년도 이월액 1,772억 9,900만원이 합쳐진 것임.
- 세입결산액은 3조 566억 6,100만원으로 세입률 106.5%, 세출결산액은 2조 4,111억 700만원으로 집행률 84.0%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6.2% 증가한 반면 세출은 13.0% 증가하여, 집행 규모의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의 두 배를 넘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2,869,005	2,392,032	476,973	2,590,754	2,092,343	498,410	278,251	299,689	△21,437
세입결산액	3,056,661	2,589,566	467,094	2,876,453	2,368,782	507,670	180,208	220,784	△40,576
세출결산액	2,411,107	2,164,140	246,967	2,132,878	1,858,739	274,139	278,229	305,401	△27,172

2. 세입·세출 처리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6,455억 5,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980억 2,100만원(△13.1%) 감소하였음.

[세입·세출 처리 상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최종예산액	전년도이월액	(A)	비율	(B)	비율	(A)-(B)	비율
계	2,869,005	2,691,706	177,299	3,056,661	106.5%	2,411,107	84.0%	645,553	22.5%
일반회계	2,392,032	2,236,121	155,911	2,589,566	108.2%	2,164,140	90.4%	425,426	17.7%
특별회계	476,973	455,585	21,388	467,094	97.9%	246,967	51.7%	220,127	46.1%

주) 결산상잉여금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수치임.

-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액,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63억 4,100만원임.

[결산상잉여금 구성]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	645,553	425,426	220,127	743,574	510,043	233,531	△98,021	△84,617	△13,404
다음연도이월액	186,973	163,911	23,062	177,299	155,911	21,388	9,674	8,000	1,674
보조금실제반납액	12,229	12,159	69	15,518	15,298	219	△3,289	△3,139	△150
채무상환액	-	-	-	-	-	-	-	-	-
지정재원잉여금	10,009	10,009	-	-	-	-	10,009	10,009	-
순세계잉여금	436,341	239,346	196,995	550,757	338,833	211,923	△114,416	△99,487	△14,928

주)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3. 총괄 검토

- 2025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과 집행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그 개선이 일반회계에 국한되고, 미집행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세출 집행률은 84.0%로 최근 5년 중 최고이고 이불용률도 2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2023년 7,999억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세입 초과수납액도 최근 5년 중 최저임.
 - 다만 결산상잉여금은 여전히 세출결산액의 4분의 1을 상회하고 순세계잉여금도 4,363억 4,100만원에 이르는바, 본예산 편성 단계의 세입 추계는 계속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검토의견 III-1·III-2 참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이불용률이 9.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p 개선되고 집행률도 90.4%로 최근 5년 중 처음 90%대에 진입한 반면, 특별회계 이불용률은 48.2%로 3.3%p 악화되고 집행률은 51.7%에 그쳤음.
 - 특별회계 미집행액 2,299억 2,900만원 가운데 93.3%인 2,146억 5,8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 ‘시설투자적립금’이 1,570억 200만원으로 73.1%를 차지함.
- 집행 측면의 부진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상당 부분이 현금 지출을 예정하지 아니한 항목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개별 사업의 집행 관리와는 별도로 공기업회계의 예산 계상 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검토의견 IV-2·IV-3·IV-4 참조).

Ⅲ. 세입 결산

1. 세입 총괄

- 세입결산액은 3조 566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2억 800만원(6.2%) 증가하였으며, 세입률은 106.5%로 3년 연속 하락하였음.
- 초과세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그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계상 비율 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추계 정확성의 개선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검토의견 Ⅲ-1 참조). 다만 초과세입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률 97.9%로 예산현액에 미달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세입률 (C/A)	징수율 (C/B)
계	2,869,005	3,179,712	3,056,661	7,903	115,148	106.5	96.1
일반회계	2,392,032	2,688,764	2,589,566	7,728	91,469	108.2	96.3
특별회계	476,973	490,947	467,094	174	23,678	97.9	95.1
공기업특별회계	391,716	403,203	384,217	126	18,859	98.0	95.2
기타특별회계	85,257	87,744	82,877	47	4,818	97.2	94.4

- 반면 징수 측면은 악화되고 있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에서 96.1%까지 5년 연속 하락하였고, 미수납액은 745억원에서 1,151억원으로 54.4% 증가하여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검토의견 Ⅲ-3 참조).

- 2025년 미수납액 증가분 153억 1,300만원은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리보류액 증가분 33억 9,200만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총괄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세입률 (C/A)	정수율 (C/B)
2021	2,343,992	2,658,844	2,576,870	7,410	74,563	109.9	96.9
2022	2,304,396	2,740,900	2,651,314	7,536	82,049	115.0	96.7
2023	2,447,633	2,870,145	2,767,140	9,088	93,916	113.0	96.4
2024	2,590,754	2,980,800	2,876,453	4,510	99,835	111.0	96.4
2025	2,869,005	3,179,712	3,056,661	7,903	115,148	106.5	96.1

주) 2021·2022회계연도의 정리보류액은 구 서식상 ‘불납결손액’으로 표기된 금액임(이하 표에서도 동일함).

2.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2조 5,895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75억 3,300만원(8.2%)이 초과 수납되었음. 초과 세입은 2022년 3,394억원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축소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세입률 (C/A)	징수율 (C/B)
계	2,392,032	2,688,764	2,589,566	7,728	91,469	108.2	96.3
지방세	425,600	501,711	438,042	5,461	58,207	102.9	87.3
세외수입	91,156	145,630	110,104	2,267	33,258	120.7	75.6
지방교부세	299,241	332,136	332,136	-	-	110.9	100.0
조정교부금	200,981	226,774	226,774	-	-	112.8	100.0
보조금	966,152	964,080	964,080	-	-	99.7	100.0
보전수입등	408,901	518,432	518,427	-	4	126.7	99.9

- 수납액은 최근 5년간 4,770억원(22.5%) 증가하였으며, 2025년 증가폭 2,207억원(9.3%)은 5년 중 최대임.
- 재원 구성은 국고보조금등 2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 지방세 16.9%, 지방교부세 12.8% 순으로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큰 구조임. 초과 수납의 절반 이상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발생한바, 이는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전년도 잉여금 때문인 것으로 보임(검토의견 III-2 참조).
- 다만 미수납액은 4년간 645억원에서 915억원까지 증가한 뒤 2025년 증가세가 멈추었고, 정리보류액은 2024년 43억 7,300만원에서 2025년 77억 2,8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음(검토의견 III-3 참조).

[최근 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평 균
예산현액	(A)	2,392,032	2,092,343	1,964,633	1,874,027	1,884,430	2,041,493
징수결정액	(B)	2,688,764	2,464,719	2,372,603	2,289,561	2,184,299	2,399,989
수납액	(C)	2,589,566	2,368,782	2,285,953	2,213,446	2,112,484	2,314,046
초과세입	(C-A)	197,534	276,439	321,320	339,419	228,054	272,553
정리보류액		7,728	4,373	8,766	7,129	7,226	7,044
미수납액		91,469	91,562	77,884	68,986	64,587	78,898
수납률	세입률(C/A)	108.2	113.2	116.3	118.1	112.1	113.5
	징수율(C//B)	96.3	96.1	96.3	96.6	96.7	96.4

가. 지방세

- 지방세 수납액은 4,380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가 수납되었음.
-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3%로 3년 연속 하락하여 최근 5년 중 최저이며, 미수납액 비율도 2022년 7.6% 이후 3년 연속 상승하여 11.6%(582억 700만원)에 이르렀는바, 부과한 세금 중 실제로 걷히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검토의견 III-3 참조).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평균
예산현액	(A)	425,600	418,400	414,500	370,700	327,000	391,240
징수결정액	(B)	501,711	476,481	472,092	477,868	433,819	472,394
수납액	(C)	438,042	421,143	421,863	436,718	394,174	422,388
정리보류액		5,461	2,816	6,674	4,821	5,233	5,001
미수납액		58,207	52,521	43,554	36,328	34,412	45,004
수납률	세입률(C/A)	102.9	100.6	101.7	117.8	120.5	108.7
	징수율(C/B)	87.3	88.3	89.3	91.3	90.8	89.4

- 세목별로는 증가액 기준으로 지방소득세(76억 9,700만원)와 재산세(50억 2,800만원)가 전체 증가액 168억 9,900만원의 75.3%를 차지하였고, 증가율로는 지난연도수입(19.7%)이 가장 높았음. 감소한 세목은 주민세(△6.0%)와 담배소비세(△0.7%)임.

[지방세 세목별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2025					2024	전년대비 수납액 증감 (E=C-D)	비율 (E/D)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수납액 (D)		
				세입률 (C/A)	징수율 (C/B)			
계	425,600	501,711	438,042	102.9	87.3	421,143	16,899	4.0
주민세	26,400	26,682	25,860	97.9	96.9	27,533	△1,673	△6.0
재산세	123,300	131,996	125,431	101.7	95.0	120,403	5,028	4.1
자동차세	71,700	78,043	72,346	100.9	92.6	69,693	2,653	3.8
담배소비세	39,000	37,622	37,622	96.4	100.0	37,922	△300	△0.7
지방소비세	20,200	20,557	20,557	101.7	100.0	19,570	987	5.0
지방소득세	133,200	152,138	141,041	105.8	92.7	133,344	7,697	5.7
지난연도 수입	11,800	54,671	15,183	128.6	27.7	12,675	2,508	19.7

- 지방세 세입의 정리보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인 54억 6,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6억 4,500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1.6%인 582억 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56억 8,600만원 증가됨.
-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 비율이 0.5%~1.4% 사이에서 등락한 반면, 미수납액 비율은 2022년 7.6%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지방세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2025	501,711	438,042	5,461	1.0	58,207	11.6
2024	476,481	421,143	2,816	0.5	52,521	11.0
2023	472,092	421,863	6,674	1.4	43,554	9.2
2022	477,868	436,718	4,821	1.0	36,328	7.6
2021	433,819	394,174	5,233	1.2	34,412	7.9
평균	472,394	422,388	5,001	1.0	45,004	9.5

주) 미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치임.

나.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으로, 임대수입, 이자, 수수료 등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과태료 등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됨.
- 세외수입 수납액은 1,101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7%가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5.6%에 그침.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평균
예산현액 (A)		91,156	85,811	69,650	61,642	68,674	75,386
징수결정액 (B)		145,630	158,096	131,092	127,868	137,779	140,093
수납액 (C)		110,104	118,191	94,673	92,941	105,610	104,303
정리보류액		2,267	1,557	2,091	2,307	1,993	2,043
미수납액		33,258	38,347	34,327	32,619	30,175	33,745
수납률	세입률(C/A)	120.7	137.7	135.9	150.7	153.7	139.7
	징수율(C//B)	75.6	74.7	72.2	72.6	76.6	74.3

- 초과 수납은 징수교부금수입(40.8%) · 그외수입(66.0%)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20.4%) 등 정상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들 과목의 보수적 계상이 세외수입 초과 세입의 주요 요인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의 수납 실적을 기초로 과목별 계상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검토의견 III-6 참조).
- 반면 부담금(△16.3%)과 입장료수입(△29.6%)은 예산현액에 미달 수납되었는바, 수요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과다 계상으로 향후 편성 시 재점검이 필요함.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주요 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C)	차액(C-A)	차액률
징수교부금수입	11,641	16,393	16,393	4,752	40.8
그 외 수입	6,557	11,065	10,887	4,329	66.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94	4,616	4,616	2,522	120.4
지난연도수입	4,500	33,820	6,556	2,056	45.7
공공예금이자수입	11,110	13,109	13,109	1,999	18.0
지적재조사조정금	1,000	2,411	2,411	1,411	141.1
위탁비반환수입	328	1,277	1,277	949	289.3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6,000	6,884	6,884	884	14.7
폐기물처리수수료	15,233	16,086	16,086	853	5.6
부담금	4,339	3,633	3,633	△706	△16.3
입장료수입	1,761	1,240	1,240	△521	△29.6

다.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3,321억 3,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4.6% 증가하였음. 증가는 보통교부세(6.2%)에서만 나타났고 특별교부세는 △34.6%, 부동산교부세는 △3.3%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년 연속 감소 추세임.
- 지방교부세의 93.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세입예산 계상 수준과 산정 과정의 자체노력 반영, 양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음(검토의견 III-4·III-5 참조).

[지방교부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2025	332,136	310,124	5,661	16,351
2024	317,369	291,787	8,662	16,920
2023	327,387	302,545	4,459	20,383
2022	368,610	332,489	5,434	30,687
2021	295,902	268,494	6,024	21,384
평균	328,280	301,087	6,048	21,145

라. 보조금

- 보조금은 국가나 도가 정책상 필요 등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달리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바, 결산상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 보조금 수납액은 9,640억 8,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국고보조금등이 33.8%, 도비보조금등이 11.5% 증가하였음.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 외에 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3억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7%로 최근 3년간 예산현액을 소폭 하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등 수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국고보조금등	예산현액	760,967	569,629	526,645	491,750	539,796
	수납액	758,850	566,920	521,987	494,422	539,622
	수납률	99.7	99.5	99.1	100.5	99.9
도비보조금등	예산현액	205,184	183,625	181,463	168,760	144,104
	수납액	205,229	184,033	183,020	169,157	144,297
	수납률	100.0	100.2	100.8	100.2	100.1

3. 특별회계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670억 9,400만원으로 세입률은 97.9%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82.2%를 차지함.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세입률 (C/A)	징수율 (C/B)
계	476,973	490,947	467,094	174	23,678	97.9	95.1
공기업특별회계	391,716	403,203	384,217	126	18,859	98.0	95.2
기타특별회계	85,257	87,744	82,877	47	4,818	97.2	94.4

- 수납액은 2024년 5,076억 7,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05억 7,500만원(7.9%) 감소하였으며, 감소분의 대부분은 하수도사업(△327억 4,700만원)에서 발생하였음.
- 수납 실적은 반대로 나빠졌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1%로 최근 5년 중 최저이고, 미수납액은 236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500만원 급증하여 최근 5년 중 최대인바, 하수도사업(92.5%)과 주차장관리(73.8%)의 낮은 수납률에 기인함.
- 특히 2023년 160억 3,200만원까지 늘었던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24년 82억 7,2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바, 하수도사업의 미수납 발생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세입률 (C/A)	징수율 (C/B)
2025	476,973	490,947	467,094	174	23,678	97.9	95.1
2024	498,410	516,080	507,670	137	8,272	101.8	98.3
2023	483,000	497,541	481,187	322	16,032	99.6	96.7
2022	430,368	451,339	437,868	406	13,063	101.7	97.0
2021	459,562	474,544	464,386	183	9,975	101.0	97.8

가.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구성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3,842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0%, 징수결정액 대비 95.2%임.
- 상수도사업은 1,770억 400만원으로 사실상 정채(0.1%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2,072억 1,300만원으로 327억 4,700만원(△13.6%)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88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9,500만원(387.9%)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공기업특별회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현액	391,716	413,559	366,293	319,934	335,394
수납액	384,217	416,718	369,661	326,244	339,260
상수도사업	177,004	176,758	159,935	152,310	148,193
하수도사업	207,213	239,960	209,726	173,934	191,067
미수납액	18,859	3,864	6,114	8,474	5,729

나. 기타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8개) 수납액은 828억 7,700만원(수납률 94.4%)으로 전년 대비 80억 7,400만원(8.8%) 감소하였으며, 감소는 주차장관리(△52억 2,100만원)·폐수처리사업(△26억 6,900만원)과 농어업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8억 2,100만원)에 기인함.
-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수납률이 73.8%에 그쳐 가장 낮았으며,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서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90만원이 전액 미수납되어 수납률 0.0%를 기록한바, 전년도에 이어 융자금 회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어업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부터 폐지되어 기타특별회계가 9개에서 8개로 정비되었음.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전년도 수납액	수납액 증감
계	85,257	87,744	82,877	94.4	90,951	△8,074
폐수처리사업	59,510	55,870	55,767	99.8	58,437	△2,669
주차장관리	10,837	16,133	11,910	73.8	17,132	△5,221
의료급여	7,071	7,148	7,148	100.0	6,571	577
교통사업	6,230	6,967	6,433	92.3	5,684	7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06	1,517	1,517	100.0	1,993	△47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1	6	-	0.0	84	△84
공영개발사업	100	99	99	100.0	226	△126
폐기물처리시설	0.3	0.3	0.3	100.0	0.3	0.0
농어업소득지원사업(폐지)	-	-	-	-	821	△821

주) 농어업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부터 폐지되어 전년도 수납액만 표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금액이 백만원 미만이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함.

【검토의견 - 세입 결산】

(Ⅲ-1) 본예산 세입 과소 추계

<현황>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1,876억 5,6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음.
- 반면 예산현액 중 본예산액 비율은 '23년 79.8% → '24년 77.4% → '25년 75.0%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세입결산액 중 본예산액 비율도 70% 내외에 머물러 있음.

[세입 예산 및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 (A)	예산		결산		
		예산현액(B)	본예산대비 (B-A)	세입결산액(C)	본예산대비(C-A)	예산현액대비(C-B)
2025	2,152,754	2,869,005	716,251	3,056,661	903,907	187,656
2024	2,006,988	2,590,754	583,766	2,876,453	869,465	285,699
2023	1,954,362	2,447,633	493,271	2,767,140	812,778	319,507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후 보정은 진전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 단계의 추계 정확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예산이 연간 재정규모의 70% 남짓에 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회의 본예산 심의가 실효성을 잃고 총괄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곧바로 추계 정확성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움.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980억 4,300만원 줄었으나 그중 710억 2,300만원은 추계 개선이 아닌 순세계잉여금 계상 비율의 제고(70.7%→81.0%)에 따른 것이며, 그 밖의 과목에서 줄어든 추계 오차는 270억 2,000만원임.
- 우리 위원회는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 추계의 개선을 연속하여 주문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고, 특히 2024회계연도 주문사항은 보전수입등·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반복적인 과소 추계 항목에 대하여 추계 기준과 근거의 정비 및 정량적 추계 모델 도입 검토를 명시한 바 있음.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본예산액의 141.9%에 이르러 본예산 편성 규모를 41.9% 초과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본예산액의 20.2%에 해당하는 4,363억 4,100만원이 발생한바, 종전 주문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의 추계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2)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소극 편성

<현황>

-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액은 5,506억 4,300만원이며, 2,716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경예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4,459억 8,100만원임.
- 직전 회계연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계상액 비율은 13.3%p, 최종예산 계상액 비율은 10.3%p 각각 높아졌고, 추가경정예산 계상액 비율은 △3.0%p 낮아졌음.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당해연도 세입결산액 (A)	본예산 계상액 (B)	비율	추경예산 계상액 (C)	비율	예산 미계상액 (A-B-C)	비율
2025	550,757	550,643	271,650	49.3	174,331	31.7	104,662	19.0
2024	601,314	599,073	215,484	36.0	207,904	34.7	175,685	29.3
2023	591,335	591,352	300,294	50.8	130,263	22.0	160,795	27.2

주) 각 비율은 세입결산액 대비 수치임.

<검토의견>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이입되나,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응하는 세출예산이 없어 다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됨.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1,046억 6,200만원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초과세입의 52.9%이자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43.7%에 해당하는바, 계상하지 아니한 잉여금이 다시 잉여금을 낳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일 수밖에 없으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속적으로 4,3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 계상액 2,716억 5,000만원(최저 발생액의 62.2%)보다는 높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년도 결산 확정 후 최초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연내 집행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2025년 9월에야 편성되었고, 당시 계상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도 855억 300만원에 그쳐 최종적으로 1,046억 6,200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파주시는 2024·2025 두 회계연도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다음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재원을 투입할 사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편성 시기가 늦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었던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수준을 높여 세입예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계상하는 방안과, ② 결산이 확정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잔여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액·계상액과 산출 근거가 예산안에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3) 세입금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증가

<현황>

- 정리보류(구 결손처분)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으로 2025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은 77억 2,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33억 5,500만원(76.7%)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배분금액 부	체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국세정리 보 류	평 가 액 부 족	기 타
2025	7,728 (100.0%)	-	19 (0.2%)	520 (6.7%)	139 (1.8%)	6,494 (84.0%)	-	526 (6.8%)	27 (0.3%)
2024	4,373 (100.0%)	-	-	456 (10.4%)	6 (0.1%)	3,909 (89.4%)	-	-	-
2023	8,766 (100.0%)	1 (0.0%)	-	799 (9.1%)	110 (1.3%)	7,445 (84.9%)	-	408 (4.7%)	-
2022	7,129 (100.0%)	3 (0.0%)	-	490 (6.9%)	694 (9.7%)	5,941 (83.3%)	-	-	-
2021	7,226 (100.0%)	177 (2.4%)	-	575 (8.0%)	-	5,295 (73.3%)	1,179 (16.3%)	-	-

-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규모(0.1% 감소)를 나타냈지만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미수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액이 큰 항목은 자금압박(88억 800만원), 폐업 또는 부도(25억 7,500만원), 무재산(13억 7,800만원) 순이었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감소액이 큰 항목은 납세태만(△61억 2,700만원), 납기미도래(△61억 1,800만원), 기타(△12억 9,000만원) 순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 에의한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기미도래
2025	91,469 (100.0%)	3,136 (3.4%)	344 (0.4%)	17,548 (19.2%)	7,894 (8.6%)	1 (0.0%)
	5 (0.0%)	539 (0.6%)	24 (0.0%)	49,177 (53.8%)	7,757 (8.5%)	5,039 (5.5%)
2024	91,562 (100.0%)	1,758 (1.9%)	55 (0.1%)	23,675 (25.9%)	5,319 (5.8%)	50 (0.1%)
	0 (0.0%)	120 (0.1%)	9 (0.0%)	40,369 (44.1%)	9,047 (9.9%)	11,157 (12.2%)
2023	77,884 (100.0%)	1,016 (1.3%)	59 (0.1%)	21,357 (27.4%)	4,511 (5.8%)	72 (0.1%)
	0 (0.0%)	571 (0.7%)	6 (0.0%)	41,898 (53.8%)	68 (0.1%)	8,321 (10.7%)
2022	68,986 (100.0%)	758 (1.1%)	323 (0.5%)	22,042 (32.0%)	4,113 (6.0%)	75 (0.1%)
	6 (0.0%)	215 (0.3%)	5 (0.0%)	25,426 (36.9%)	9,299 (13.5%)	6,720 (9.7%)
2021	64,587 (100.0%)	935 (1.4%)	202 (0.3%)	20,521 (31.8%)	4,284 (6.6%)	104 (0.2%)
	0 (0.0%)	211 (0.3%)	15 (0.0%)	18,142 (28.1%)	16,111 (24.9%)	4,057 (6.3%)

<검토의견>

1) 정리보류액 증가

- 2025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은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정리보류액이 발생한 모든 사유에서 증가하였고, 사유별로는 무재산 64억 9,400만원(84.0%)에 편중되어 있는바, 사유별 증가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정리보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나, 각 사유별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관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체납관리 대상에서 사라지거나 방치된 상태로 소멸시효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리보류 처분 이후에도 징수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세입 결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미수납액 증가

- 2021회계연도 대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각각 26.9%, 22.5% 증가한 것에 비해 전체 미수납액은 41.6%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항목인 무재산(235.4%)·자금압박(171.0%)·폐업 또는 부도(84.2%)가 같은 기간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압박(53.8%)은 납부의무자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에 해당하나, 체납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유임.
- 자금압박으로 분류된 건에 대하여 실제 납부능력, 분납 가능성, 향후 징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질·상습 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바, 2025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 150억 7,90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된 것은 그 결과로 볼 수 있음(검토의견 III-5 참조).

(Ⅲ-4)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소극 계상

<현황>

- 보통교부세 세입결산액은 3,101억 2,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83억 3,700만원(6.2%) 증가했는데, 이 중 2,800억원(90.2%)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금액은 301억 2,400만원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매년 1분기 중에 확정·통보하고 있어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국세 징수 전망 등을 감안한 자체 추계를 통해 교부액을 산정 후 본예산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에서 산정액이 통보된 이후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가 10% 내외인데, 이는 당초 산정액보다 최종교부액이 감액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임.

[보통교부세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당초산정액	최종교부액 (A)	본예산 계상액 (B)		추경예산 계상액 (C)		예산 미계상액 (A-B-C)	
				비율		비율		비율
2025	310,124	310,124	250,000	80.6	30,000	9.6	30,124	9.7
2024	302,178	291,787	250,000	85.6	17,318	5.9	24,469	8.3
2023	338,978	302,545	227,700	75.2	20,000	6.6	54,845	18.1

주) 비율은 최종교부액 대비 수치임.

※ 자료 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내역('23~'25,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본예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액이 통보된 이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보통교부세 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1.3%p 상승(금액 기준 약 23.1% 증가)한 9.7%인바, 보통교부세의 세입예산 계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파주시와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시흥시나 안양시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에서 통보된 2025년도 산정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사정의 변동에 따라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가능한 수단이므로, 최종교부액이 당초 산정액보다 줄어들더라도 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임.
- 산정액 통보 이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기상 세출 조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5)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페널티 확대

<현황>

-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파주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액은 △109억 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감산액이며, 2025년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5번째로 큰 페널티액 규모임.
-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55억 600만원), 지방보조금 절감(33억 1,800만원) 등 항목의 인센티브액이 컸던 반면, 인건비 건전 운영(△192억 5,300만원)의 페널티액이 커 전체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액이 감산되었음.

[최근 5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인건비 건전 반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예산집행노력 (이·불용액)	현금성 복지 경비지출운영
2025	△10,908	△19,253	4	103	5,506	3,318		△461	△125
2024	△2,393	-	90	61	△635	△2,455		-	
2023	1,030	-	115	395	1,186	△666		-	
2022	156	-	63	163	1,300	△1,370		-	
2021	9,080	4	50	26	2,001	3,406	△244	3,837	

※ 자료 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내역(행정안전부) 재구성

-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액은 213억 6,3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바, 기준재정수입액은 클수록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번째로 큰 페널티액 규모임.
-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150억 7,9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111억 8,500만원) 등 항목의 페널티액이 컸던 반면, 경상 세외수입 확충(△3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13억 100만원) 등 항목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음.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지방세 징수를 제고	지방세 채납액 축소	경상세의 수입확충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
2025	21,363	11,185	15,079	△3,600	△1,301	-	-
2024	△663	△2,264	12,112	△14,271	3,760	-	-
2023	△125	△2,010	6,895	△4,238	△800	-	28
2022	8,811	△4,972	6,886	△210	7,077	-	30
2021	16,502	3,760	10,512	△2,708	4,912	-	26

※ 자료 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내역(행정안전부) 재구성

-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은 109억 800만원 감산,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은 213억 6,300만원 가산으로, 두 요인이 모두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2025년 자체노력 반영에 따른 재정부족액 축소 효과는 322억 7,1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임.

<검토의견>

- 2025년 파주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양쪽에서 자체노력 페널티를 부과받았는바, 수요액에서는 인건비 건전운영이, 수입액에서는 지방세 채납액 축소와 징수를 제고 항목이 각각 주된 원인이 되었음. 자체노력 반영은 세입 징수와 세출 관리의 결과가 다음 연도 교부세로 되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채납 관리와 인건비 운용을 지속적인 관리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준재정수요액의 인건비 건전운영 반영액은 △192억 5,300만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액 규모인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결산액의 초과 규모가 192억 5,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69억 5,900만원 증가하며 기준인건비 대비 비율도 직전 회계연도의 9.6%에서 14.8%로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 특히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상 인건비 건전운영 반영액 또한 △87억 2,900만원의 감액이 발생하였는바, 인건비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대규모 세출예산 절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인건비 건전운영 항목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과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인건비 건전운영 항목 반영사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전년도				반영액
	인건비 결산액 (A)	기준인건비 (B)	초과액 (A-B)	반영비율 (1-A/B)	
2025	149,037	129,784	19,253	△14.8	△19,253
2024	140,121	127,827	12,294	△9.6	-
2023	134,731	125,946	8,785	△7.0	-
2022	127,950	122,994	4,956	△4.0	-
2021	116,323	116,984	△661	0.5	4

※ 자료 근거 : 보통교부세 산정내역(행정안전부) 재구성

- 아울러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의 페널티 또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62억 3,700만원)와 징수율 제고(94억 200만원) 등 항목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검토의견 III-3에서 살펴본 지방세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결과인바, 체납 관리 실적이 교부세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수납액 관리 대책을 교부세 자체노력 지표와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Ⅲ-6)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

<현황>

-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1,000만원 이상의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과목이 총 71건, 80억 4,700만원에 이릅니다.
- 세입목별로 보면 그외수입 17건 38억 6,200만원(48.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7건 18억 5,100만원(23.0%), 위탁비반환수입 14건 9억 9,000만원(12.3%) 등 3개 세입목이 전체의 83.3%를 차지함.
- 이 중 최근 3개년 동일 부서·세입목에서 연속하여 예산 미편성 상태로 수납이 발생한 항목은 36건으로, 2025회계연도 수납액 기준 27억 6,400만원에 달하는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금 성격 과목이 17건 9억 2,700만원, 그외수입이 8건 9억 8,100만원으로, 3년 연속 발생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함.

[세외수입 세입목별 예산 미편성 수납 집계(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세입목	전체건수	3년연속건수	실제수납액(2025)	수납액 비중
계	71	36	8,047	100.0
그외수입	17	8	3,862	48.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7	11	1,851	23.0
위탁비반환수입	14	6	990	12.3
부담금	1	1	418	5.2
기타이자수입	7	5	347	4.3
과징금	2	-	221	2.8
기타과태료	4	3	125	1.6
징수교부금수입	1	1	111	1.4
공유수면사용료	1	1	11	0.1
기타(5개 세입목)	7	-	104	1.3

주) 3년연속건수는 3년 연속 예산 미편성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임.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채 1,000만원 이상의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과목이 71건 80억 4,700만원에 이르고, 이 중 36건은 최근 3개년 연속 동일 부서·세입목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우발적 수입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세입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세입예산의 완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당시 그외수입 과목의 예산 미편성 수납액 발생에 대하여 집행부는 “발생내역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반복 항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17건)은 보조사업·위탁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사업 종료 시점과 정산 일정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므로 소관 부서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그외수입(8건)은 성격을 재분류하여 적정 세입목에 편성하거나 최소액을 계상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외수입 3년 연속 예산 미편성 수납액 1천만원 이상 현황(2023~2025)]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과목명(세입목)	2025년 수납액	2024년 수납액	2023년 수납액
1	허가3과	부담금	418,817	463,760	572,911
2	건강증진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740	17,652	23,083
3	버스정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7,497	197,868	238,641
4	문화예술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23,529	19,342	92,375
5	평생교육과	징수교부금수입	111,870	22,669	88,868
6	행정지원과	그외수입	93,441	1,292,561	98,725
7	자치협력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70,528	79,890	113,124
8	허가3과	기타과태료	65,100	90,614	113,060
9	관광과	그외수입	61,642	247,463	74,445
10	복지정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1,330	60,350	50,891
11	평생교육과	기타이자수입	48,516	60,114	27,352
12	도시농업과	그외수입	43,736	449,956	90,400
13	노인장애인과	기타이자수입	40,920	41,789	28,996
14	복지지원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3,292	89,329	15,132
15	체육과	그외수입	27,734	192,526	764,839
16	행정지원과	위탁비반환수입	23,744	24,851	23,220
17	여성가족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674	550,246	889,688
18	노인장애인과	위탁비반환수입	19,953	343,749	169,513
19	동물관리과	기타과태료	19,700	12,987	13,299
20	동물관리과	그외수입	19,138	32,883	26,633
21	자원순환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630	27,077	48,603
22	광탄면	공유수면사용료	11,893	17,529	11,273

주) 2025회계연도 수납액 순이며, 3년 연속 예산 미편성 수납액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 건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목명(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1	예산법무과	그외수입	1,200	1,164
2	평화경제과	그외수입	716	709
3	자원순환과	그외수입	707	705
4	공공건축과	그외수입	556	556
5	에너지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29	427
6	허가3과	부담금	418	418
7	여성가족과	위탁비반환수입	395	395
8	기후위기대응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9	209
9	노인장애인과	과징금	176	176
10	보육아동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77	175
11	건강증진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9	159
12	주택과	그외수입	156	156
13	청년청소년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1	151
14	버스정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47	147
15	기후위기대응과	기타이자수입	134	134
16	자원순환과	위탁비반환수입	127	127
17	에너지과	위탁비반환수입	124	124
18	문화예술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23	123
19	평생교육과	징수교부금수입	111	111
20	도시농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3	93

주)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수납액 상위 20개임.

IV. 세출 결산

1. 세출 총괄

- 2025회계연도 세출 집행률은 84.0%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이며, 이불용률도 2년 연속 하락하여 5년 중 최저임. 최근 5년간 지출액은 23.6% 증가하였음.
- 다만 불용률 9.0%의 하락에는 예산현액 증가에 따른 상대적 개선의 성격도 있는바,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임.
- 보조금반납금은 121억 6,40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세출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현액	(A)	2,869,005	2,590,754	2,447,633	2,304,396	2,343,992
지출액	(B)	2,411,107	2,132,878	1,967,215	1,858,681	1,949,997
다음연도이월액	(C)	186,973	177,299	179,402	174,283	164,334
보조금반납금	(D)	12,164	15,333	25,239	23,988	18,656
집행잔액	(E=A-B-C-D)	258,759	265,242	275,776	247,444	211,004
집행률	(B/A)	84.0	82.3	80.3	80.6	83.1
불용률	(E/A)	9.0	10.2	11.2	10.7	9.0

주)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2. 일반회계 세출

- 일반회계 집행률은 90.4%로 2년 연속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였고 불용률도 2.1%로 5년 중 최저인 반면, 다음연도이월액은 1,639억 1,100만원으로 5년 중 최대 규모임.
- 예산현액과 예산액의 차이인 전년도 이월분이 최근 5년간 매년 1,470억~1,550억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 1,500억원 안팎이 해마다 다음 연도로 넘어와 집행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검토의견 IV-5 참조).
- 보조금반납금은 120억 8,70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적음. 같은 기간 국·도비 보조금 수납액은 9,640억 8,000만원으로 28.3% 증가하였으므로 수납액 대비 반납 비율은 2.0%에서 1.2%로 낮아진 셈임. 다만 세출결산상 보조금반납금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계상되는 것인바, 감소가 당해연도 집행·정산 관리의 개선에 따른 것인지는 반납 건별 귀속연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25	2,236,121	2,392,032	2,164,140	163,911	12,087	51,893
2024	1,944,973	2,092,343	1,858,739	155,911	15,111	62,582
2023	1,813,590	1,964,633	1,722,349	147,370	24,949	69,963
2022	1,725,090	1,874,027	1,654,240	151,042	22,713	46,032
2021	1,728,813	1,884,430	1,675,143	148,937	18,443	41,906

- 증가폭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5.2%), 사회복지(36.0%), 문화및관광(29.3%), 농림해양수산(19.2%) 순이며, 감소폭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43.4%), 교통및물류(△3.5%) 순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구성비
계	2,164,140	1,858,739	1,722,349	1,654,240	1,675,143	100.0
사회복지	1,075,094	790,478	714,188	663,183	608,569	49.7
교통및물류	194,637	201,899	178,428	190,335	161,890	9.0
기타	176,708	168,865	161,751	149,922	140,782	8.2
환경	127,079	121,455	146,218	148,384	150,605	5.9
문화및관광	122,129	94,442	90,695	88,860	82,680	5.6
일반공공행정	99,541	176,120	100,866	98,287	127,421	4.6
농림해양수산	96,596	81,030	76,887	78,143	85,234	4.5
국토및지역개발	93,925	81,230	81,875	73,704	91,142	4.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6,285	46,161	79,836	59,192	53,959	3.5
보건	43,043	38,062	42,324	44,382	32,958	2.0
교육	38,941	38,729	38,000	35,953	34,613	1.8
공공질서및안전	20,155	20,262	11,275	23,888	105,285	0.9

주) 구성비는 2025년 결산액 기준임.

3. 특별회계 세출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각각 전년 대비 △9.0%, △12.1% 감소하였음.
- 집행률은 51.7%로 전년 대비 3.3%p 하락하여 최근 5년간 47.5~59.8%로 예산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3%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회계 집행잔액의 79.9%에 해당하며 대부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455,585	476,973	246,967	23,062	76	206,866
공기업특별회계	372,144	391,716	177,023	21,799	34	192,859
기타특별회계	83,440	85,257	69,944	1,262	42	14,007

가.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은 45.1%로 상수도사업이 35.9%, 하수도사업이 53.2%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A-B-C-D)
공기업특별회계	372,144	391,716	177,023	21,799	34	192,859
상수도사업	173,195	182,288	65,523	1,584	29	115,150
하수도사업	198,949	209,427	111,499	20,214	5	77,708

주) 공기업 결산서(지출예산결산보고서)의 서식상 항목명은 ‘불용액’ 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집행잔액’ 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이하 동일).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은 집행률이 5년간 33~37%에 머물러 있고 집행잔액 비중도 63.1%로 5년 중 가장 높으나,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시설투자적립금’ 982억 4,100만원과 미사용 예비비 110억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 미집행액은 59억 900만원(예산현액의 3.2%)에 그침.
- ‘시설투자적립금’ 미집행액이 982억 4,100만원에 이르고 순세계잉여금도 1,098억 6,000만원이 누적된 점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 계획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검토의견 IV-2·IV-3 참조).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25	173,195	182,288	65,523	1,584	29	115,150
2024	161,681	174,316	64,050	9,093	18	101,153
2023	152,744	160,897	53,409	12,635	39	94,813
2022	150,268	150,455	51,283	8,153	2	91,016
2021	142,847	147,139	55,181	187	58	91,712

-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감소로 전기 대비 6.3%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감가상각비·대행운영관리비·정수비를 중심으로 3.7% 증가하여, 매출총이익이 전기 48억 500만원 흑자에서 당기 5억 5,300만원 적자로, 영업이익도 27억 8,100만원 흑자에서 31억 9,400만원 적자로 전환되었음.
- 원가보상률이 94.6%에 그쳐 영업활동만으로는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이나,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40억 6,800만원이 영업손실을 상쇄하여 당기순이익은 8억 4,100만원 흑자를 유지하였음(검토의견 IV-4 참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A)	전기(B)	증감(A-B)	증감률
영업수익 (A)	56,219	60,042	△3,823	△6.3
영업비용 (B)	59,413	57,261	2,152	3.7
영업이익 (C=A-B)	△3,194	2,781	△5,975	△214.8
영업외수익 (D)	4,068	3,697	371	10.0
영업외비용 (E)	33	92	△59	△64.1
당기순이익 (C+D-E)	841	6,386	△5,545	△86.8

주) 영업수익은 매출액이며,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의 합계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예산현액이 2024년을 정점으로 12.4% 축소되었고, 집행률은 2021년 65.9%에서 2022년 45.2%로 급락한 이후 45~55%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시설투자적립금’과 미사용 예비비에서 발생하는 점은 상수도과 같으나 그 형태가 연도별로 달라, 2021·2022년에는 미사용 예비비가, 2023년 이후에는 기타자본적지출이 주된 요인이었음.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25	198,949	209,427	111,499	20,214	5	77,708
2024	229,707	239,243	130,543	10,478	1	98,220
2023	201,881	205,395	94,917	9,536	-	100,941
2022	166,309	169,479	76,650	3,514	13	89,301
2021	187,212	188,254	124,142	3,169	-	60,942

- 하수도사업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15.9%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118억 8,700만원(35.2%) 확대되었음. 영업비용 증가액 128억 6,000만원의 대부분(127억 1,400만원)은 매출원가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 처리장비(51억 5,600만원)·감가상각비(39억 700만원)·관거비(36억 5,400만원)가 고르게 늘었으며, 증가율로는 관거비가 79.1%로 가장 높았음.
- 원가보상률이 51.1%에 그쳐 대규모 시설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영업수익만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가 겹쳐 당기순손실은 455억 6,0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검토의견 IV-4 참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과목	당기(A)	전기(B)	증감(A-B)	증감률
영업수익 (A)	47,803	46,830	973	2.0
영업비용 (B)	93,426	80,566	12,860	15.9
영업이익 (C=A-B)	△45,622	△33,735	△11,887	35.2
영업외수익 (D)	4,684	6,474	△1,790	△27.6
영업외비용 (E)	4,622	3,495	1,127	32.2
당기순이익 (C+D-E)	△45,560	△30,756	△14,804	48.1

나. 기타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집행률은 82.0%로 직전 회계연도 93.7% 대비 11.7%p 하락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700만원으로 107억 2,000만원(326.1%) 증가하여 불용률이 12.6%p 상승하였음.
- 집행률은 2022년 69.2%를 저점으로 2024년 93.7%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한 것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021년 120억 4,1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5년 12억 6,3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임(검토의견 IV-9 참조).

- 최근 5년간 예산현액은 1,241억 6,800만원에서 852억 5,7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24회계연도에 주차장관리(△89억원)·폐수처리사업(△182억원) 등의 예산 규모가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25	83,440	85,257	69,944	1,262	42	14,007
2024	74,990	84,850	79,545	1,816	202	3,286
2023	105,133	116,706	96,539	9,859	249	10,058
2022	98,393	110,434	76,508	11,573	1,259	21,094
2021	110,401	124,168	95,530	12,041	155	16,442

4. 예산 이용·전용·이체

- 2025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 전용은 총 1건 4억원이 발생하였는데 농업정책과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서 연구용역비(207-01)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로 전용한 건임(2025.5.22.).
- 전용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연구용역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의결된 사업의 집행방식이 변경된 사안임.
- 예산 이체는 총 134건 830억 5,400만원으로, 2025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에 따른 것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주요 사유
예산 이용	-	-	
예산 전용	1	400	집행방식 변경(위탁)
예산 이체	134	83,054	2025.10.1. 조직개편

5. 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원(일반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으로 이를 준수하였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산액의 38.1%를 지출결정한 반면, 일반예비비는 50억원 중 1,830만원(0.3%)만 지출결정되어 [강릉시 가뭄 피해 구호품 구입]과 [경기도 노선버스 파업 비상수송 지원] 2건에 쓰였을 뿐임. 2024년 집행률 1.8%에 이어 사실상 미집행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바, 계상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재원을 실수요 사업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반회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801-02) 편성목이 없어 관련 지출을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한 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2024·2025회계연도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해당 목적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종전 지적사항이 개선·정착된 것으로 판단됨.

[예비비 집행 총괄]

(단위 : 천원)

회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10,000,000	1,926,163	1,493,137	326,810	106,214
일반예비비	5,000,000	18,300	9,970	-	8,329
재해·재난목적	5,000,000	1,907,863	1,483,167	326,810	97,884
기타특별회계	535,381	-	-	-	-
의료급여	35,381	-	-	-	-
폐수처리사업	500,000	-	-	-	-

6. 예산 이월

- 2025회계연도 다음연도이월액은 1,869억 7,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96억 7,400만원(5.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월액 1,639억 1,100만원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임.

[최근 5년간 이월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계	186,973	177,299	179,402	174,283	164,334
일반회계	163,911	155,911	147,370	151,042	148,937
명시이월	102,674	106,867	90,192	114,967	109,861
사고이월	33,093	28,283	43,976	23,214	28,979
계속비이월	28,143	20,759	13,201	12,860	10,096
특별회계	23,062	21,388	32,031	23,240	15,397
명시이월	12,653	5,422	19,736	14,679	12,739
사고이월	5,682	9,069	1,586	1,677	2,658
계속비이월	4,726	6,896	10,708	6,884	-

주)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액은 1,153억 2,600만원으로 이월액의 61.6%를 차지하여 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임. 명시이월 비중은 2021~2022년 74%대에서 2023년 이후 61~63%대로 낮아졌으나,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최근 5년간 1,000억원 내외에서 이월액의 과반을 점하는 구조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검토의견 IV-5 참조).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구분	2025		2024		2023		2022		2021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A)	2,392,032	476,973	2,092,343	498,410	1,964,633	483,000	1,874,027	430,368	1,884,430	459,562
이월건수	129	20	124	8	122	13	101	11	114	12
이월금액 (B)	102,674	12,653	106,867	5,422	90,192	19,736	114,967	14,679	109,861	12,739
이월률 (B/A)	4.2	2.6	5.1	1.0	4.5	4.0	6.1	3.4	5.8	2.7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액은 387억 7,500만원으로 이월액의 20.7%를 차지하며, 2023년 455억 6,200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가 전년 대비 3.8% 상승하였음. 일반회계는 17.0%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7.3%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구분	2025		2024		2023		2022		2021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A)	2,392,032	476,973	2,092,343	498,410	1,964,633	483,000	1,874,027	430,368	1,884,430	459,562
이월건수	64	15	54	11	54	5	48	9	45	7
이월금액 (B)	33,093	5,682	28,283	9,069	43,976	1,586	23,214	1,677	28,979	2,658
이월률 (B/A)	1.3	1.1	1.3	1.8	2.2	0.3	1.2	0.3	1.5	0.5

다.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액은 328억 6,900만원으로 이월액의 17.5%를 차지하며, 2021년 100억 9,600만원에서 5년 연속 증가하여 225.5% 늘어난바, 세 이월 유형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검토의견 IV-7 참조).

- 특별회계 이월액은 230억 6,200만원으로 16억 7,400만원(7.8%)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33.3%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37.3%, 계속비이월은 31.4%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계속비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구분	2025		2024		2023		2022		2021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A)	2,392,032	476,973	2,092,343	498,410	1,964,633	483,000	1,874,027	430,368	1,884,430	459,562
이월건수	8	7	10	1	9	1	8	1	4	-
이월금액 (B)	28,143	4,726	20,759	6,896	13,201	10,708	12,860	6,884	10,096	-
이월률 (B/A)	1.1	0.9	0.9	1.3	0.6	2.2	0.6	1.5	0.5	-

【검토의견 - 세출 결산】

(Ⅳ-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 관련 결산서류 기재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서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이월액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이 전액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첨부서류 「이월명세서」(14)-3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현황에도 하수도사업의 전년도 이월분 집행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음. 두 사항이 결산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바 집행부가 위원회 회부 전에 결산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음.
- 정정 내용은 ① 다음연도이월액 202억 1,400만원(건설개량 14건 113억 7,200만원, 사고이월 8건 41억 1,500만원, 계속비이월 7건 47억 2,600만원)의 계상과 ② 전년도 이월분 집행실적의 기재임.
 - ②는 종전에 전액 불용으로 표시되어 있던 명시이월 32억 9,600만원의 집행실적을 집행 26억 1,600만원 · 불용 2억 8,800만원 · 재이월 3억 9,100만원으로 기재하고, 표 자체가 없던 사고이월 71억 8,100만원(10건)에 대하여 집행 43억 5,300만원 · 불용 28억 2,800만원의 표를 신설한 것임.
 - ①의 정정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46.7%에서 37.1%로 조정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 · 전체 회계의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도 함께 조정되었으며, ②는 총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최근 3년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불용률 (E/A)
2023	201,881	205,395	94,917	9,536	-	100,941	46.2	49.1
2024	229,707	239,243	130,543	10,478	1	98,220	54.5	41.0
2025	198,949	209,427	111,499	20,214	5	77,708	53.2	37.1

주) 2025년 수치는 정정된 결산서 기준임.

<검토의견>

- 결산서 작성 과정의 오류가 확인된 즉시 집행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원회 회부 전에 정정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두 건 모두 하수도사업의 이월 자료가 통합결산서로 연계되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바, 회계별·서류별로 나뉘어 작성되는 이월 자료가 통합결산서로 취합되는 단계에서 상호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작성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2)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 저조

<현황>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률은 51.7%로 예산현액(4,769억 7,3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쳐 최근 5년간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집행률(90.4%)과 대비되어 파주시 전체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 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미집행액(다음연도이월+집행잔액)은 2,299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2%에 이르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69억 9,500만원으로 지출액(2,469억 6,700만원)의 79.7%에 달함.
- 특별회계 미집행의 대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며, ‘시설투자적립금’과 예비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실제로 상수도사업은 집행잔액의 94.8%(1,092억 4,100만원)가 ‘시설투자적립금’·예비비로, 집행률 50% 미만 실사업은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1건에 그쳐 실사업의 집행부진으로 볼 부분은 크지 않음. 다만 ‘시설투자적립금’ 계상 자체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하였음(검토의견 IV-3 참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률 50% 미만(1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500	238	261	-	47.7	실사업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	98,241	-	-	98,241	0.0	시설투자적립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00	-	-	10,000	0.0	예비비
일반예비비	1,000	-	-	1,000	0.0	예비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777억 800만원 중 ‘시설투자적립금’ 명목의 계상액 587억 6,100만원과 미사용 예비비 115억원(사업예비비 5억·자본예비비 110억)을 제외한 실질 미집행액은 74억 4,600만원(예산현액의 3.5%)으로, 상수도사업(59억 900만원, 3.2%)과 유사한 수준임.

- 다만 하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과 달리 다음연도이월액이 202억 1,400만원에 이르러, 미집행의 형태가 불용이 아니라 이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질 미집행액 74억 4,600만원 중에서도 20억 5,000만원(27.5%)은 전년도 이월분의 미집행에서 발생하였음.

- 실질 미집행은 하수관로 정비 등 자본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건의 경우 집행률이 58.6~10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상당수가 지출 실적 없이(집행률 0.0%) 예산 대부분이 미집행되었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률 저조 자본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구분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미집행 사유
노후 하수관로 개량	5,734	-	5,467	명시	267	0.0	행정절차(재원협의 등) 이행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5,880	2,677	3,203	계속비	-	45.5	공사 진행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2,195	-	2,059	명시	136	0.0	행정절차(재원협의 등) 이행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2,164	113	-	-	2,050	5.2	지장물 간섭·토지사용 협의 지연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504	409	1,094	계속비	-	27.1	공사 진행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1,184	-	1,055	명시	129	0.0	행정절차(재원협의 등) 이행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900	-	900	명시	-	0.0	미집행 내역에 따른 이월

주) 집행률 50% 미만인 미집행액 5억원 이상인 사업들이며, 미집행 사유 출처는 2025회계연도 공기업결산서임.

<검토의견>

- 특별회계 집행률이 51.7%로 일반회계 집행률(90.4%)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나, 상수도사업은 집행잔액의 94.8%가 ‘시설투자적립금’·예비비로서 실질 집행부진으로 볼 부분이 크지 않음.
- 다만 ‘시설투자적립금’은 2025회계연도에 전액 불용되었는바, 그 계상 방식에 관하여는 검토의견 IV-3에서 따로 다루었음.
- 실질 미집행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 사업 상당수가 지출 실적 없이 예산 대부분을 이월하였음.

- [노후 하수관로 개량]·[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3개 사업은 “행정절차(재원협의 등)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출 실적 없이 이월되었는바, 선행 행정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연내 착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이들 사업의 미집행은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재원 자체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나, 예산이 의결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순연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의회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바, 자본사업 편성 시 선행 행정절차의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착수가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전년도 이월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이월구분	전년도 이월액(A)	집행액(B)	미집행액(A-B)	미집행사유
계	2,164	113	2,050	-
명시이월(건설개량)	365	89	275	지장물 간섭 및 토지사용 지연
사고이월	1,798	23	1,774	지장물 간섭 및 토지사용 지연

(Ⅳ-3) 공기업특별회계 '시설투자적립금'※1) 운용

<현황>

- 두 공기업회계는 자본예산에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2025회계연도에 두 회계 모두 지출·이월 없이 전액 불용되었음(상수도사업 982억 4,100만원, 하수도사업 587억 6,100만원, 계 1,570억 200만원으로 각 회계 예산현액의 53.8%·28.0%).
- 상수도사업의 '시설투자적립금'은 계상 → 전액 불용 → 잉여금 환원 → 재계상이 반복되고 있음.

[상수도사업 '시설투자적립금' 회차별 계상 및 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

2025년도 예산					2025회계연도 결산			
본예산	제2회추경	제3회추경	제4회추경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68,809	63,658	96,560	98,241	98,241	-	-	98,241	0.0

주) 전액 불용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원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은 1,098억 6,000만원임.

- 그러나 예산총칙 제11조가 정한 건설개량적립금의 예정처분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상수도사업 2025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과 결산 처분]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4회 추경	2025 결산
이월이익잉여금	63,141	20,793	20,793
당년도 손익	△7,910	△12,440	841
처분 대상 계	55,231	8,352	21,634
건설개량적립금	55,231	8,352	-

주1) 본예산·제4회 추가경정예산 값은 각 예산서 예산총칙 제11조(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조문에 기재된 수치이며, 본예산의 이월이익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확정 전의 추정치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치로 조정되었음. 결산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으로 처분액은 없음.

주2) 재무제표상 적립금은 이익적립금 13억 3,100만원·감채적립금 12억 800만원·건설개량적립금 293억 1,100만원으로 전기와 변동이 없음. 이익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 적립 한도(자본금 26억 6,500만원의 2분의 1)에 이르렀고, 감채적립금은 미상환 차입금이 없어 각각 추가 적립 사유가 없는 것임.

※1) '시설투자적립금'은 예산과목의 이름이 아니라 집행부가 세부사업명에 붙인 것으로, 결산서상 과목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 단위사업 '기타자본적지출' → 세부사업 '기타자본적지출(시설투자적립금)' → 통계목 '406-02 기타자본적지출'임. 재무제표상 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가 정한 이익적립금·감채적립금·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서로 다른 것임.

- 하수도사업회계는 결손이 누적되어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계인바, 본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모두 예산총칙 제11조(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를 “해당없음”으로 정하고 있음. 자본예산의 ‘시설투자적립금’ 계상액은 2024년도 107억 1,500만원, 2025년도 본예산 363억 100만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 587억 6,100만원임.

<검토의견>

‘시설투자적립금’은 실제 적립 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이라기보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을 맞추기 위한 조정 항목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지출도 적립도 아님

- 두 회계의 2025회계연도 계상액 1,570억 200만원(상수도 982억 4,100만원, 하수도 587억 6,100만원)이 결산에서 지출·이월 없이 전액 불용되었으며(집행률 0.0%), 예산상 ‘지출’로 계상되었으나 실제로 지출된 바 없고, 재무제표상 적립으로 대체되지도 아니하였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자본예산에는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만을 지출로 계상하고 그 지출재원으로서 보전재원을 제외하고 현금수입이 예정되는 외부자금만을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밝히고 있는바※2),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적립금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이 금액이 계상된 ‘406-02 기타자본적지출’도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을 담는 잔여 과목임.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명칭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예산편성기준·조례 어디에도 없으며, 같은 기준이 ‘기타자본적지출’ 아래에 둘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은 결산에서 승인받은 납부금·전출금을 계상하는 ‘이익정산금’ 뿐임.

※2)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의 8.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

- 같은 기준은 「9. 보전재원의 처리」에서 보전재원을 “공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으로 자본적 수입만으로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 때 충당해 주는 유보재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예산으로 계상할 때에는 예산총칙 제11조에 의거 처분하는 용도와 금액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예정 처분할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은 공기업 내에 유보자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적립금을 이와 별도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도록 정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예산편성기준·조례 어디에도 없음.
- 같은 기준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의 상수도사업 지출은 ‘가. 수익적 지출’과 ‘나.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계상할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로 들고 있는 것은 상수도 생산(처리)시설의 신·증설, 상수도시설의 공동설치·운영,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비, 노후관로 교체, 미급수 지역 시설확장·개량 등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시설투자 사업비이며 적립금은 나타나지 않음.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과 각 회차 추가경정예산 예산서 산출내역도 ‘시설투자적립금’ 아래 금액 한 줄 뿐으로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같은 기준은 「7. 당기순손익 처리」에서 “당기 순손익은 사업의 수지를 예측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당기순이익의 적립(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이라 하고 “정확한 당기 순손익은 결산에 나타남”이라고 밝히고 있음.
- 곧 적립은 예산총칙 제11조로 의결받고 자금은 유보자금에 두었다가 결산에서 처분하는 것이 기준이 정한 방식이며, 이를 자본예산의 지출로 계상하는 방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상수도사업은 기준이 정한 자리인 결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처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준이 예정하지 아니한 자본예산에 ‘시설투자적립금’ 98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음.
- 따라서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투자적립금’을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예산총칙과 조례가 정한 건설개량적립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상수도사업의 2025년도 예산총칙 제11조(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는 건설개량적립금 처분액을 본예산에서 552억 3,100만원으로 정하였다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3억 5,200만원으로 조정하여 각각 의결을 받았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액이 없어 예산총칙이 정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잉여금명세서상 건설개량적립금도 293억 1,100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예정처분의 전제였던 당년도 예정결손금 124억 4,000만원은 실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기순이익 8억 4,100만원이 발생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6억 3,400만원에 이르렀는바, 재원 부족으로 불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 2025회계연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16억 8,000만원과 단기금융상품 9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사정을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
- 「과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제4호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제1~3호※3)의 순서대로 처분하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하도록 정하는바,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2024·2025 회계연도 두 해 동안 57억 8,100만원※4)이 적립 대상이 됨.
- 2025회계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되어 이번 결산 승인의 대상이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예산총칙 제11조가 정한 건설개량적립금 예정처분 83억 5,200만원과 「과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제4호가 정한 적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제1호의 이익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 한도에 도달하였고, 제2호의 감채적립금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상수도사업은 차입금이 없으며, 제3호의 납부금·전출금은 계상된 바 없으므로 처분 대상은 제4호의 건설개량적립금임.

※4) 2024회계연도 51억 800만원, 2025회계연도 6억 7,200만원 합계 57억 8,100만원임. 조례 본문이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예산편성기준의 표준 예산총칙 제11조 서식도 이월이익잉여금과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최소치임.

3) 예산과 결산 지표의 왜곡

- 이러한 계상은 예산과 결산 지표도 함께 왜곡하는바, 자본예산 예산액 1,040억 8,100만원의 94.3%가 ‘시설투자적립금’ 이고, 예산현액 1,822억 8,800만원 기준으로 적립금과 미사용 예비비를 합한 1,092억 4,100만원이 59.9%를 차지함.
- 예산은 의결의 대상인 동시에 집행의 계획인바, 그 절반 이상이 처음부터 집행을 예정하지 아니한 항목으로 채워지면 예산총액이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내지 못하게 됨.
- 집행을 35.9% 또한 실질 미집행액 59억 900만원(예산현액의 3.2%)과 크게 어긋남(검토의견 IV-2 참조).
-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①투자계획이 있는 사업은 적립금이 아닌 실사업비로의 전환, ②투자 소요가 없어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유보 재원의 활용 계획 제시, ③적립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 제11조의 예정처분으로 정하고 자본적지출로 중복 계상하지 아니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대비

- 두 회계는 잉여금 사정이 정반대임. 상수도사업은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예산총칙 제11조가 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없음을 같은 조에서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투자적립금’의 계상은 두 회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각각 982억 4,100만원과 587억 6,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 항목이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설치 조례가 정한 적립금과는 다른 성격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없는 하수도사업회계에도 같은 계상을 하는데 대하여 두 회계 간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4)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악화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영업이익이 전기 27억 8,100만원 흑자에서 당기 △31억 9,400만원 적자로 전환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영업손실이 전기 △337억 3,500만원에서 당기 △456억 2,200만원으로 118억 8,700만원 확대되었음.
- 상·하수도사업은 요금 조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만성적 영업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으로 산정한 파주시의 원가보상률(상수도 94.6%, 하수도 51.1%)은 전국 평균 요금현실화율※5)(상수도 74.4%, 하수도 45.3%)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을 감안할 때 영업적자 자체보다는 직전 연도 대비 손익이 악화된 원인이 큰 것으로 보임.

※5) 2024 상수도 통계, 2024 하수도 통계(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5년 경기도 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용인시	△18,710	△19,891	△17,375	△13,099	△12,497
화성시	△17,917	△10,830	△7,119	△1,965	△263
남양주시	△14,729	△11,587	△9,243	△7,084	△4,824
김포시	△9,214	△8,279	△4,432	626	2,938
동두천시	△8,939	△9,641	△8,389	△5,776	△4,873
안산시	△8,019	△11,668	△14,613	△18,617	△14,714
가평군	△7,671	△6,056	△4,487	△3,508	0
수원시	△7,565	△8,286	△13,977	△11,643	△15,436
여주시	△7,051	△6,383	△5,562	△2,279	3,985
구리시	△6,965	△7,637	△7,091	△6,152	△5,214
포천시	△6,918	△7,686	△9,278	△8,511	△7,326
양평군	△6,640	△3,218	△1,164	△1,703	△421
하남시	△4,977	△4,046	△1,018	△1,538	△1,864
연천군	△4,719	△5,835	△3,628	△4,970	△5,507
성남시	△3,401	△7,377	△10,711	△20,913	△18,913
파주시	△3,194	2,781	△493	815	51,560
오산시	△2,713	△2,988	△2,371	△1,791	△3,549
양주시	△2,657	△2,400	△1,924	△2,758	△3,307
안성시	△2,547	△4,547	△6,408	△4,875	△4,187
부천시	△2,352	△4,737	△9,523	△10,911	△8,015
의정부시	△1,991	△2,879	△7,164	△14,137	△12,778
이천시	△1,447	710	1,151	3,738	1,925
과천시	△927	△909	△1,258	△914	△1,455
고양시	△920	△4,695	△11,462	△13,859	△10,293
광주시	△574	△7,266	△9,906	△10,475	△4,466
평택시	347	△2,905	△6,871	△11,429	5,745
군포시	621	△2,542	△3,356	△2,750	△2,128
의왕시	746	714	294	501	△926
시흥시	866	△103	△3,418	△5,231	△3,858
광명시	1,350	2,450	4,813	△305	59
안양시	2,724	1,053	1,012	316	△1,659

※ 자료 근거 : 지방공공기관통합고시(클린아이)

[최근 5년 경기도 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용인시	△74,043	△78,950	△58,905	△62,884	△69,663
남양주시	△54,537	△56,935	△12,636	△49,726	△50,439
화성시	△53,005	△41,352	△35,296	△35,672	△37,518
파주시	△45,623	△33,736	△23,159	△21,808	△26,268
포천시	△44,936	△42,930	△29,041	△35,540	△37,382
광주시	△43,161	△40,069	△25,341	△32,088	△39,522
평택시	△43,006	△50,407	△35,040	△31,125	△42,936
수원시	△40,034	△30,013	△6,653	△14,334	△25,196
양평군	△28,956	△34,910	△27,114	△29,595	△41,093
양주시	△28,884	△24,441	△27,499	△24,972	△30,834
연천군	△27,473	△22,521	△15,439	△17,221	△23,135
김포시	△25,975	△30,099	△19,749	△25,014	△27,412
가평군	△25,623	△25,590	△22,653	△22,749	△23,922
이천시	△22,286	△22,541	△20,985	△21,795	△23,370
여주시	△22,247	△22,577	0	△22,040	△23,690
안양시	△21,838	△23,631	△33,069	△23,714	△28,960
안산시	△19,497	△17,241	△7,594	△1,002	△12,547
안성시	△18,714	△24,181	△19,242	△23,045	△22,369
구리시	△14,972	△15,001	△13,109	△11,503	△15,777
의정부시	△13,649	△17,271	△15,932	△16,829	△20,721
하남시	△12,117	△10,779	△18,959	△16,138	△11,563
광명시	△8,474	△10,787	△3,530	△4,848	△9,684
시흥시	△5,758	△8,601	△22,785	△9,345	△7,922
동두천시	△5,585	△5,048	△7,002	△4,372	△5,203
고양시	△5,501	△10,676	△18,820	△21,917	△21,729
의왕시	△4,413	△6,028	61	1,071	△2,729
군포시	△3,608	△12,447	△6,780	△8,397	△10,175
과천시	△2,487	△2,212	△2,003	△2,127	△2,842
오산시	△2,416	△5,344	△14,455	△12,470	△13,391
성남시	4,939	△6,922	△22,461	△18,220	△14,160
부천시	6,980	△321	120	△854	△1,219

※ 자료 근거 : 지방공공기관통합고시(클린아이)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익이 전기 599억 5,800만원에서 당기 562억 1,4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은 매출원가가 전기 773억 6,300만원에서 당기 900억 7,700만원으로 16.4% 증가하여 두 회계 모두 영업손익이 악화되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주요 내역(발취)]

(단위 : 백만원, %)

과목	당기(A)	전기(B)	증감(A-B)	증감률
매출액	56,219	60,042	△3,823	△6.3
급수수익	56,214	59,958	△3,744	△6.2
매출원가	56,772	55,237	1,535	2.8
판매비와 관리비	2,640	2,024	616	30.4

- 하수도사업 매출원가의 증가는 관거비 79.1%, 처리장비(처리장 운영비용) 14.8%, 감가상각비 10.4% 증가에서 비롯되었는바, 관거비와 처리장비는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행운영관리비의 비중이 큰 항목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손익 주요 내역(발취)]

(단위 : 백만원, %)

과목	당기(A)	전기(B)	증감(A-B)	증감률
매출원가	90,077	77,363	12,714	16.4
관거비	8,276	4,622	3,654	79.1
처리장비	39,954	34,798	5,156	14.8
감가상각비	41,523	37,616	3,907	10.4
무형자산상각비	323	325	△2	△0.6

- 급수량·사용량의 변동과 대행운영관리비 등 주요 원가 항목의 증가 요인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5) 일반회계 명시이월 증가 및 관리 강화

<현황>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이월액은 1,639억 1,100만원으로 5년 연속 1,400억원을 상회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이 1,026억 7,400만원(62.6%)으로 전체 이월액의 3분의 2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이월액 유형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계	163,911	155,911	147,370	151,042	148,937
명시이월	102,674	106,867	90,192	114,967	109,861
사고이월	33,093	28,283	43,976	23,214	28,979
계속비이월	28,143	20,759	13,201	12,860	10,096

-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 사업은 26건, 770억 2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75.0%를 차지함.

[일반회계 주요 명시이월 사업(10억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1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17,914	8,865	49.4	'26년 완료예정인 다년도사업
2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15,628	7,930	50.7	'26년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3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10,716	7,529	70.2	'26년 9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4	금정22길 광장(주차장)조성('24년 특조)	5,000	4,949	98.9	토지보상 협의 지연
5	(가칭)성평등 공간 조성	6,842	4,318	63.1	토지·건물주 매입 협의 지연
6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617	3,631	78.6	'27년 6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7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78	3,484	72.9	'27년 6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8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14	3,419	72.5	'27년 6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9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891	3,091	79.4	'27년 6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10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전환사업)	21,166	2,520	11.9	'26년 완료예정인 다년도사업
11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3,920	2,199	56.1	인허가 협의중 보완사항 발생
12	도로 설해대책 운영	13,250	2,141	16.1	설해대책기간 장기계속계약추진
13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2,596	2,060	79.3	'26년 8월 준공예정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3,995	1,945	48.6	노선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27년) 변경
15	7월 호우 피해(공공시설 복구비)	5,508	1,904	34.5	'26년 11월 수내천 복구사업 준공예정
16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전환사업)	4,003	1,898	47.4	수용재결 완료 후 공사착공
17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3,011	1,837	61.0	'26년도 완료예정인 다년도사업
18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국비지원)	2,135	1,830	85.7	제작사 차량출고 지연
19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3,771	1,748	46.3	3개년 사업계획('25년~'27년)에 따라 이월
20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1,610	1,599	99.3	추경 편성 후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소요
21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2,847	1,520	11.8	'26년 3월 준공예정인 다년도사업
22	무장에 관광 연계성 강화	3,000	1,437	47.9	공모 선정 후 추경 편성
23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21,680	1,397	6.4	시공사 회계문제로 정산 지연
24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4,239	1,304	30.7	보상장기화 및 지하매설물 간섭 등
25	금정22길 광장조성	2,719	1,225	45.0	'26년 6월 준공예정
26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2,500	1,222	48.9	탐골지하차도 고양시 구간 협의 지연 등

주) 예산현액 및 명시이월액은 세부사업 기준(편성목 합계)이며, 순서는 명시이월액 순임.

<검토의견>

-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규모와 관행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관행적 이월의 지양과 법령에 따른 이월유형의 구분 관리”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추경 편성 후 연내 미착공·명시이월 관행의 지양과 이월 요건의 철저한 준수”가 각각 주문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 및 즉시 집행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이월사유의 정형적 기재

-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 상당수가 “202○년도 ○○월 완료예정인 다년도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과 같이 정형화된 문구로 같음되어 해당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개별적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의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작성 실무에 반영되도록 이행 관리가 필요함.

2) 다년도사업의 계속비 우회

- 명시이월 사유로 “다년도사업”을 제시하는 사업 중 대규모·장기 건설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수년에 걸쳐 시행되고 연도별 소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전 통제와 진도 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인바, 다년도사업을 매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뒤 명시이월로 반복 처리하는 것은 계속비 제도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비 편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동일 사업의 반복 이월

- 동일 사업이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확인되는바,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이월률이 2023년 2.0%에서 2025년 72.5%로 오히려 높아졌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은 연차가 거듭될수록 이월과 불용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주요 명시이월 사업 결산 현황(2023~2025)]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액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5	4,714	1,294	3,419	72.5	-
	2024	1,432	442	989	69.0	-
	2023	3,092	3,028	62	2.0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5	17,914	5,895	8,865	49.4	2,790
	2024	8,829	350	7,500	84.9	979
	2023	5,309	3,979	1,314	24.7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025	3,995	585	1,945	48.6	1,464
	2024	9,827	7,832	1,995	20.3	-
	2023	13,000	12,972	27	0.2	-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2025	4,239	874	1,304	30.7	694
	2024	3,030	290	1,000	33.0	1,739
	2023	3,709	1,678	2,030	54.7	-

주) 3년 연속 명시이월 발생 및 2025년 발생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이월률 변화가 뚜렷한 사업이며, 예산현액 및 이월액은 세부사업 기준(편성목 합계)임.

-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인 만큼, 동일 사업의 연례적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구분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지출 실적 없는 전액 이월

- 예산 편성 후 연내 지출 실적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도 18건 45억 6,7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간주예산 또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편성 시점부터 연내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편성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회계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명사이월액	이월사유
1	법원 율곡광장공원 조성	900	900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 공사 발주 예정
2	운정호수·소리천 보행교량 설치	700	700	하반기 특교세 교부 결정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
3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수립	500	500	용역기간(12개월) 소요에 따른 이월
4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00	400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5	운정 피클볼장 건립	350	350	민원에 따른 변경 장소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중
6	8.3~14.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81	281	동절기 공사 제한 등 사업기간 부족
7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220	220	용역수행(1년) 소요
8	8.3~14. 호우 피해 하천 기본시설 재해복구	206	206	2025년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속 추진
9	공릉천 자전거도로 정비	200	200	하반기 특교세 교부 결정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
10	설마1교 재가설 공사	200	200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1	(탄현면) 법흥리 마을정원 조성	150	150	사업대상지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
12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2차)(도시관리과)	100	100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13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2차)(산림정원과)	100	100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
14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90	90	타당성 검토 과업기간 조정
15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54	54	사업 참여 취소 등에 따른 대체 시설 선정
16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54	54	하반기 특교세 교부 결정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
17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자체)	40	40	마무리 공사와 설계변경 절차 이행
18	캠프하우스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22	22	캠프하우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주) 결산서상 세부사업 기준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5) 명시이월비의 과다 계상

- 2025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비로 의결되거나 간주예산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1,197억 7,900만원이나 결산상 확정된 명시이월액은 1,026억 7,400만원으로 승인액 대비 171억 500만원(14.2%)이 실제로는 연내 집행·불용·사고이월 등으로 전환되어 이월되지 아니하였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승인액 및 결산확정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승인액 (A)	결산확정액 (B)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119,779	102,674	△17,105	△14.2%
4회 추경예산(33개부서) 118,025			
간주예산(4개부서) 1,754			

- 승인 시점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명시이월비를 계상·의결받는 사례는, 명시이월 승인 시점에는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결산 심사 시점에야 실제 규모가 파악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예산집행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바, 엄격한 이월액 관리와 함께 명시이월 승인 시 사업별 집행 전망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회계 명시이월 승인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소관)	승인액 (A)	결산확정액 (B)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체육과)	8,865	8,865	-	0.0%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체육과)	2,520	2,520	-	0.0%
로컬푸드 복합센터(도시농업과)	7,654	7,529	△125	△1.6%
노인·장애인복지관(노인장애인과)	2,859	1,397	△1,462	△51.1%
문산 실내배드민턴장(체육과)	2,914	2,199	△715	△24.5%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체육과)	312	202	△110	△35.2%

(Ⅳ-6) 일반회계 집행부진 사업

<현황>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86건, 예산현액 1,219억 5,500만원 규모이며(예비비잔여분·내부거래지출 제외), 이 중 예산현액 10억원 이상 사업이 20건, 1,070억 9,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집행부진의 원인을 예산서·결산서로 대조하여 보면, ①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제3·4회 추경, 간주예산)에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증액된 경우와 ② 연초에 재원을 확보하고도 보상·소송·인허가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교부 시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말에 편성된 사업(▲)으로 구분됨.

[집행률 30% 미만 주요 사업 현황(예산현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유형
체육과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1,166	4,932	23.3	②
도로건설과	야동-금송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12,100	1,907	15.7	①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10,716	3,186	29.7	②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8,466	2,253	26.6	②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새 금촌(도시재생 뉴딜)	7,742	1,912	24.7	②
균형개발과	금정22길 광장(주차장)조성('24년 특조)	5,000	50	1.0	▲
공공건축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78	1,105	23.1	①
공공건축과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714	1,294	27.4	①
공공건축과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617	986	21.3	①
도로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4,239	874	20.6	②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3,995	585	14.6	②
공공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891	744	19.1	①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진입도로 개설)	2,737	413	15.0	②
문화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2,730	-	0.0	②
도로건설과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2,596	508	19.5	②
버스정책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2,135	305	14.2	▲
체육과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1,610	10	0.6	①
안전총괄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덕천리세천)	1,560	18	1.1	②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1,300	196	15.0	②
관광과	공릉관광지 야간경관 개선	1,000	268	26.8	①

주) 유형 ①: 제3·4회 추경·간주예산 신규 편성 또는 대폭 증액 사업, ②: 연초(본예산·상반기 추경) 편성 또는 전년도 이월 재원 사업. ▲: 특별조정교부금·국비 등 의존재원의 교부 시기에 따라 하반기 이후 편성된 사업.

<검토의견>

1) 연말 추경·간주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

-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시비로 16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연도말 집행액은 1,070만원(집행률 0.6%)에 불과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소요”를 사유로 15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음.

-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단계의 사업에 공사비를 포함한 전액을 편성한 것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재원을 수개월간 묶어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편성 시점에 이미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음 연도 예산을 앞당겨 확보한 것과 다르지 않음.
- 같은 제3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교하체육공원 테니스장 증설](4억원, 4.9%), [공릉관광지 야간경관 개선](10억원, 26.8%),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수립](5억원), [법원 율곡광장공원 조성](9억원), [과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2억 2,000만원), [설마1교 재가설 공사](2억원, 이상 4건 전액 미집행)도 유사한 사례로, 이들 7건의 신규 편성액 48억 3,000만원 중 연내 집행액은 2억 9,800만원(6.1%)에 그침.
- 제4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과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4억원)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2건(2억원)도 전액 명시이월된바, 제3·4회 추경에서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된 부진사업은 10건, 54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연내 집행액은 2억 9,800만원(5.4%)에 불과함
- 신규 편성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연말 증액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야동-금송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은 제4회 추경에서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연도말 계속비이월이 101억 9,200만원에 이르러 증액분이 사실상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제3회 추경에서 4개 사업에 138억 7,000만원이 증액된 후 136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음.
-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제3회 추경 계상 50억원, 집행률 1.0%),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간주예산 사업 3건(운정호수·소리천 보행교량 설치 등 9억 5,400만원, 2025. 12. 31. 성립, 전액 이월), 국비 내시에 따라 제4회 추경에서 증액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증액분 18억 3,000만원 전액 이월)은 의존재원의 교부 시기상 연말 편성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편성과 동시에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이월 후 신속한 집행이 담보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체재원 사업의 연말 편성 후 저집행·전액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형해화하고 본예산·추경 심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관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추경 편성 후 연내 미착공·명시이월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편성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설계·인허가 등 선행절차 완료 여부, 계약·공정 소요기간)을 엄격히 검토하고 연내 착수가 불가능한 자체재원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연초 편성·이월 재원 사업의 집행부진

- 반면 연초에 재원이 확보되었음에도 부진한 사업들은 대체로 보상·소송·인허가 등 선행절차의 지연에 기인함.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덕천리세천)]은 본예산 편성 사업임에도 사업대상지 내 개인 간 소송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1.1%에 그쳤고, 계속비 사업인 [평화누리 첫동네(금촌 도시재생 뉴딜)]는 연부액이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50억원 이상 증액 편성(71억 7,100만원)되었으나 집행률 24.7%에 머물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14.6%)은 노선 변경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2027년까지로 변경되었음.
-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20.6%)은 보상 장기화와 지하매설물 간섭,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15.0%)·[고창교 교량 확장](19.5%)·[동물보호센터 건립](15.0%)은 행정절차·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이 각각 집행부진의 사유로, 예산 편성 시점에 선행절차의 완료 시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전년도 이월 재원만으로 구성된 사업의 반복 부진도 확인되는바,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은 당해연도 신규 편성 없이 이월액 8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다시 26.6%만 집행하여 62억원이 재이월되었고,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23.3%)도 예산현액 211억원의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며,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는 계속비 최종연도임에도 27억 3,0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36조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제1항)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역시 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시공’의 공종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설계비, 보상비 등 연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계상하되 공사비는 설계 완료 후 연도별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보상 협의·소송 등 선행절차의 진척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포함한 예산이 계상·유지된 위 사업들은 집행부가 스스로 정한 편성 기준에 비추어도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넘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용지보상이 수반되는 투자사업은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절차의 진행 단계와 연계하여 연차별 소요액을 계상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된 후 계상하는 편성지침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7)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증가

<현황>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총사업비)과 연도별 금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이며,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체차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비이월이라 함.
- 계속비이월은 5년간 178.7% 증가하여 세 유형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 증가분은 사실상 [야동-금송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101억 9,200만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감소함. 다만 동 사업은 계속비로 의결받은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하여는 검토의견 Ⅳ-8에서 따로 다루었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이월액 유형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계	163,911	155,911	147,370	151,042	148,937
명시이월	102,674	106,867	90,192	114,967	109,861
사고이월	33,093	28,283	43,976	23,214	28,979
계속비이월	28,143	20,759	13,201	12,860	10,096

주) 검토의견 Ⅳ-5의 표와 같음.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부액 286억 5,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33억 5,000만원을 합친 520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1억 1,100만원에 그치고 예산현액의 54.1%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연부액에 육박하는 규모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당해연도 집행률 (B/A)	계속비 이월액	집행잔액
계	52,007	21,111	40.5	28,143	2,750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12,100	1,907	15.7	10,192	-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캠프하우스 도로 개설)	8,466	2,253	26.6	6,213	-
평화누리 첫동네,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7,742	1,912	24.7	5,829	-
울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594	5,927	68.9	2,666	-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진입도로 개설)	2,737	413	15.0	2,324	-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820	226	27.5	594	-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79	217	45.2	262	-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4,457	4,397	98.6	60	-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2,730	-	0.0	-	2,73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238	217	91.1	-	19
평평한 마을 조성	3,640	3,639	99.9	-	-

<검토의견>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11개 중 6개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률이 30%를 밑돌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연부액이 실제 집행 가능한 공정 규모를 초과하여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이월은 의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명시이월이나 원인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사고이월과 달리, 의결된 총사업비·연부액의 범위에서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원인행위 요건 없이 완성 연도까지 반복 이월이 가능하므로, 연부액이 실제 공정 규모를 상회하면 미집행액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임.
 - 이월은 의결된 연부액의 집행 시기를 미루는 것일 뿐 연부액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연부액의 변경은 별도의 예산 의결 사항임(검토의견 IV-8 참조).

- 계속비 사업별로 연차별 공정계획과 연부액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진도와 이월 누적 규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공정계획과 연부액 산정 근거가 예산안에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와 별개로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 명시이월의 반복 처리로 운용되고 있지 아니한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8) 계속비 의결 절차 및 조서 관리 미비

<현황>

-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를 예산서 본문에 편제하여 왔음.
- 2025회계연도 결산상 계속비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2025년도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야동-금송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은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서에 편제된 계속비 사업조서 8종 어디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음. 반대로 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속 등재되어 있고 2025년도 조서에는 총사업비 72억원과 연도별 연부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2024·2025회계연도 결산 계속비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음.
- 계속비 사업조서는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매년 본예산과 그 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 편제되었으나, 2024·2025회계연도에는 본예산에만 편제되었음.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 편제 이력]

회계연도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최종추경 첨부
2021	○ 6건	×	×	○ 4건	-	-	편제
2022	○ 6건	×	×	○ 6건	-	-	편제
2023	○ 9건	×	×	×	×	○ 10건	편제
2024	○ 9건	×	×	×	-	-	미편제
2025	○ 11건	×	×	×	×	-	미편제
2026	○ 10건	×	×	-	-	-	-

- 조서 미편제 기간에도 연부액은 변경되었음. 2025회계연도에는 제2·3·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개 사업의 연부액이 변경되었고, 2024회계연도에도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연부액이 14억 7,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은 10억원에서 17억 5,0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됨.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기간의 연부액 변경]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부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회차
2024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78	100	△1,378	제2회 추경
2024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1,000	1,750	750	제1·2회 추경
2025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1,573	-	△1,573	제2회 추경
2025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911	2,485	1,573	제2회 추경
2025	평평한 마을 조성	498	530	32	제2회 추경
2025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250	3,852	2,602	제3회 추경
2025	과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50	126	△324	제4회 추경
2025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2,000	12,000	10,000	제4회 추경

<검토의견>

1) 계속비 의결 근거 없이 계속비이월로 처리

-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되어 101억 9,2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으나, 계속비로 의결받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결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업을 계속비로 처리한 데 대하여는 그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등재되지 않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명시이월비로 이월됨.

- 202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동 사업이 신규 등재되면서 계속비승인 변경사유란에 “’2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25년~’31년)”, “25년 4회 추경에 100억원 편성 예정으로 26년 편성액 추후 조정 예정” 으로 기재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같은 시기에 의결된 점을 고려하면 계속비로 전환됨에도 사업비 100억원을 증액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임.
-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도 조서 없이 계속비로 집행한 뒤 이듬해 예산서에서 소급 반영하였는데, 2024회계연도에 연부액 111억원이 계상되고 84억 6,6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음에도 2024년도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2025년도 본예산 조서에서 “’2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사유와 함께 사후에 반영되었음.
- 이에 관하여 ① 동 사업이 계속비로 의결된 시점과 근거, ② 2025년도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누락된 경위, ③ 결산상 계속비이월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 ④ 기재된 사업기간이 같은 법 제42조제2항 본문이 정한 5년의 연한을 초과하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한 연장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하며, 계속비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환 시점의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편제하여 의결을 받은 뒤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추가경정예산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 미편제

- 계속비 사업조서는 2021~2023회계연도에는 매년 본예산과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편제되었으나 2024·2025회계연도에는 본예산에만 편제되었음. 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연부액은 변경되어 2025회계연도에는 제2·3·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개 사업의, 2024회계연도에는 2개 사업의 연부액이 각각 변경된바, 의회는 연부액 변경 사실과 규모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계속비 여부와 총사업비·연부액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편제되지 아니하면 연부액 변경은 세출예산의 증감으로만 나타나 계속비 의결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음.
-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의 연부액 15억 7,3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의 연부액이 같은 금액만큼 증액되어 계속비 사업 간에 연부액이 그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서가 편제되었더라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사항임.
- 따라서 계속비 연부액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함께 편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서와 결산서가 계속비 사업의 범위를 다르게 관리

-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은 2025년도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총사업비 72억원과 연도별 연부액이 기재되어 계속비로 의결되었고 2026년도 조서에도 같은 총사업비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5년도 연부액 23억원 또한 정상 계상되었음에도, 2024·2025회계연도 계속비 결산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여러 해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비의 해당연도 집행결과를 사업별로 각각 기록하는 서류로 정하면서 “전년도 결산서와 대조하여 작성하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 요구”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대조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누락된 것임.
- 앞의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이 예산서에서 계속비로 의결된 바 없는 사업이 결산에서 계속비로 나타난 경우라면,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은 그 반대로 예산서에서 계속비로 의결된 사업이 결산에서 계속비로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임. 방향은 다르나 계속비 사업의 범위가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서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 이 밖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의 총사업비가 2026년도 예산서 조서와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1,298억원, 결산서 「이월명세서」에는 933억 3,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2026년도 조서 본문은 2023년~2031년, 같은 조서 변경사유란은 2025년~2031년,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2029년으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함.
-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결산 단계의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기재를 서류 간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9)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급증

<현황>

- 2025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40억 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2억 8,700만원) 대비 326.1%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함(동 회계 집행잔액 8억 8,700만원→129억 7,300만원, 집행률 98.3%→78.2%).
- 폐수처리사업 집행잔액 129억 7,300만원을 통계목별로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124억 3,500만원(전체 집행잔액의 95.8%)이 발생하였음.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572억 2,100만원 중 447억 8,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78.2%에 그쳤으며, 예산현액의 21.7%가 미집행됨.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예산현액	59,510	53,088	6,422	12.0
지출액	46,537	52,201	△5,664	△10.8
다음연도이월액	-	-	-	-
보조금반납금	-	-	-	-
집행잔액	12,973	887	12,086	1,362.5
집행률	78.2	98.3	△20.1%p	-
불용률	21.7	1.6	20.1%p	-

<검토의견>

-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과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처리구역 내 입주 사업자(원인자)가 납부하는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 등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운영관리비는 시설 운영·관리에,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 보완·개선과 신규 투자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바, 실집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개선·보완 예산의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보완 예산은 발주·공정 계획이 확정된 소요액만 편성하고 연말 증액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금 예산은 예산서상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46억 1,200만원)와 ‘개선보완’ (126억 800만원, 이 중 46억원은 제4회 추경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출은 447억 8,600만원(78.2%)에 그쳐 124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특히 집행액이 제4회 추경 증액 전 예산(526억 2,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연말 증액분 46억원은 결과적으로 전액 불용으로 이어진바, 위탁금의 편성 내역별 집행 실적과 증액 편성의 사유, 시설개선충당금 재원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V. 기금 결산

1. 기금 총괄

- 2025회계연도 기금은 15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1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 증가하였음. 청사건립기금(3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계정(3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10.5%) 등 상위 4개가 전체의 83.2%를 차지함.

[2025회계연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
계	198,424	11,867	8,940	201,351	2,926
청사건립기금	70,001	1,949	385	71,565	1,5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37,922	1,148	1,140	37,930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35,749	1,236	-	36,986	1,2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617	617	50	21,185	567
재난관리기금	12,979	4,536	5,272	12,243	△736
체육진흥기금	5,174	161	96	5,239	65
남북교류협력기금	3,812	121	104	3,829	17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379	194	53	3,520	14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2,046	1,310	1,167	2,189	143
차활기금	2,089	76	40	2,125	36
노인복지기금	2,066	64	47	2,083	17
성평등기금	1,026	32	27	1,032	5
옥외광고발전기금	871	217	295	793	△78
식품진흥기금	520	124	229	415	△105
고향사랑기금	166	74	30	210	44

2. 기금 운용

-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액이 조성액을 상회하여 2년 연속 축소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도 규모가 축소되었는바, 기금 존치 목적 달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청사건립기금은 전체 기금의 35.5%를 차지하면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8,500만원에 그친바,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과 연계한 기금 조성액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회계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대부분 「2024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 사유로 이루어진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변경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검토의견 - 기금 결산】

- ※ 행정안전부가 2025. 12.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4회계연도)의 분석 결과를 파주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비교함에 따라 기준연도 차이(1년)가 있음. 전국·유형 평균은 2024회계연도, 파주시 수치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임.
- ※ 파주시는 2024회계연도 성과분석부터 자치단체 유형이 종전 '시-2'에서 '시-1'(수원·고양·용인·화성·부천·김포 등 19개 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종합점수 69.85점으로 시-1 유형 내 12위임.

(V-1) 사업비 집행률

<현황>

- 파주시의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83.3%로 전년(79.6%)보다 3.7%p 상승하였고, 시-1 유형 평균(76.7%), 기초자치단체 평균(66.3%), 전국 평균(75.6%)을 모두 상회함.

[사업비 집행률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전국(2024회계연도)	38,047	50,338	75.6
광역시	24,677	30,165	81.8
기초	13,369	20,174	66.3
시-1	3,757	4,899	76.7
파주시(2025회계연도)	20.7	24.9	83.3

주1) 행정안전부 자료를 그대로 옮김에 따라 억원 단위로 표기함(이하 동일).

주2)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 100(%)

※ 사업비 편성액·지출액: 기금운용계획서(변경 후 최종)·기금결산보고서상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701·702·704·705, 보전지출 311·601·602·802)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분은 지출액에서 제외.

※ 재난관리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적립성 기금은 대상에서 제외.

주3) 파주시 대상 기금 11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 및 적립만 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제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액 5,061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분으로 산식에 따라 제외.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계	2,493	2,078	83.3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53	1,167	80.3
식품진흥기금	243	228	93.9
옥외광고발전기금	322	283	87.7
체육진흥기금	111	96	86.8
남북교류협력기금	107	104	97.2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4	53	64.0
노인복지기금	48	47	99.3
자활기금	40	40	100.0
고향사랑기금	35	30	85.3
성평등기금	27	27	1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	-	0.0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해연도 편성 사업비(2,065만원)는 미집행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061만원만 집행하여 산식상 집행률 0%로 처리됨.

<검토의견>

-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계획적인 기금운용으로 볼 수 있는바, 자치단체 유형이 시-2에서 시-1로 상향되었음에도 각 평균을 모두 상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별로는 편차가 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편성액 8,400만원 중 5,38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64.0%에 그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해연도 편성 사업비 2,065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것을 전제로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 규모와 실집행 규모의 지속적인 괴리는 계획 수립의 정확성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 일정과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2) 사업비 편성 비율

<현황>

- 파주시의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299억 7,3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액은 24억 9,300만원으로 편성 비율은 8.3%에 그쳐, 시-1 유형 평균(27.7%)과 기초자치단체 평균(21.9%)을 크게 하회함.

[사업비 편성 비율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편성액(A)	계획상 지출액(B)	편성비율(A/B)
전국(2024회계연도)	50,338	150,806	33.4
광역시	30,165	58,748	51.3
기초	20,174	92,057	21.9
시-1	4,899	17,682	27.7
파주시(2025회계연도)	24.9	299.7	8.3

주)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100(%)

※ 기금운용계획서(변경 후 최종)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계획액 대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의 비율. 제외 대상 기금은 사업비 집행률과 동일.

<검토의견>

- 사업비 편성 비율은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바, 파주시 기금은 지출계획의 대부분이 예치금(재예치) 등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재원을 적립·순환시키는 데 그치고 있어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 지출이 매우 낮은 구조임. 집행률(V-1)이 높더라도 애초에 편성된 사업비 자체가 작으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있게 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액 211억원, 지출계획 173억 4,500만원 중 사업비 2,065만원)·체육진흥기금(52억원, 사업비 비중 3.8%)·남북교류협력기금(38억원, 3.6%) 등 조성액 규모에 비하여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중장기 사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3)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현황>

- 파주시의 2025회계연도 분석대상 기금 수입결산 총액 6억 4,900만원 중 타회계 전입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유일하여 의존율은 15.4%로, 전년(21.2%)보다 낮아졌고 시-1 유형 평균(25.0%)과 기초자치단체 평균(32.3%)을 하회함. 분석대상 기금들의 수입은 공공예금·예탁금 이자수입과 기부금(고향사랑기금)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의존율(A/B)
전국(2024회계연도)	9,219	85,685	10.8
광역시	4,704	71,699	6.6
기초	4,515	13,986	32.3
시-1	1,072	4,295	25.0
파주시(2025회계연도)	1.0	6.4	15.4

주1)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수입결산 총액 × 100(%)

※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예치금 회수(714-01) 제외. 법정무기금(재난관리·식품진흥·자활·도시및주거환경정비·옥외광고발전·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표 적용 제외.

주2) 파주시 대상 기금은 6개(고향사랑·남북교류협력·노인복지·성평등·체육진흥·농업전문인력육성).

<검토의견>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체 수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바, 파주시의 기금 수입 흐름은 바람직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분석대상 기금의 수입이 공공예금·예탁금 이자수입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어 저금리 전환 시 기금 규모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바, 기금별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4)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현황>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적의 지표이며, 낮을수록 많은 점수가 부여됨. 파주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비율은 3.3%로 전년(3.6%)보다 낮아졌으며, 시-1 유형 평균(3.9%)과 기초자치단체 평균(3.5%)을 하회함.
- 전년 검토보고에서는 시-2 유형 평균(1.6%) 대비 크게 상회하여 기금 정비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유형이 시-1로 상향되면서 상대 평가가 평균 이하로 전환된 것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분석대상 제외 (C)	분석대상 기금 (D=B-C)	비율 (D/A)
전국(2024회계연도)	4,516,909	633,621	364,897	268,724	5.9
광역시	1,964,701	334,970	154,800	180,171	9.2
기초	2,552,208	298,650	210,097	88,554	3.5
시-1	536,776	81,122	60,127	20,995	3.9
파주시(2025회계연도)	25,895	2,013	1,138	874	3.3

주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총액(조성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100(%)

※ 기금 총액에서 법정의무기금·감채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주2) 파주시 분석대상 7개 기금(고향사랑·남북교류협력·노인복지·성평등·체육진흥·청사건립·농업전문인력육성) 연도말 조성액 874억 8,200만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조 5,895억원 기준.

<검토의견>

- 이 지표는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낮을수록 유리한바, 파주시의 3.3%는 시-1 유형 평균(3.9%)과 기초자치단체 평균(3.5%)을 모두 하회하여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임.
- 다만 분석대상 7개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보다 2.1% 증가하였음에도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분모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9.3%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아울러 청사건립기금이 조성액의 81.8%를 차지하고 있어, 이 비율을 파주시 기금 규모의 적정성으로 그대로 읽기는 어려운바, 이 기금이 사용 목적과 시기가 정해진 적립이라는 점에서 지표가 상정하는 「불필요한 기금 조성」과는 성격이 다르며, 같은 성과분석에서도 사업비 집행률(V-1)은 청사건립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으로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지표는 수치의 높낮이보다 그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바, 파주시의 경우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계획과 적립·집행 시기의 정합성을, 나머지 소규모 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 지출의 부진(검토의견 V-2 참조)을 각각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질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년 대비 상대평가가 호전된 것은 유형이 시-2에서 시-1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인바, 유형 변경과 분모 증가라는 두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V-5) 기금 수 현황

<현황>

- 2025회계연도 파주시의 분석대상 기금은 7개(고향사랑 · 남북교류협력 · 노인복지 · 성평등 · 체육진흥 · 청사건립 · 농업전문인력 육성)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1 유형 평균(6.6개)과 유사한 수준임.
- 전년 검토보고에서는 시-2 유형 평균(4.7개) 대비 다소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유형 상향으로 평균 수준으로 재평가됨.

[기금 수 현황 비교]

(단위 : 개)

구 분	총 기금 (A)	법정의무 (B)	감채 (C)	통합재정안정화 (D)	폐기물처리시설 (E)	분석대상 (A-B-C-D-E)	평균
전국(2024회계연도)	2,680	1,256	2	237	35	1,150	4.7
광역시	283	96	1	17	1	168	9.9
기초	2,397	1,160	1	220	34	982	4.3
시-1	274	125	-	19	4	126	6.6
파주시(2025회계연도)	15	6	-	2	-	7	-

주1) 자치단체별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 감채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관리기금 · 재정안정화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

주2) 파주시 법정의무기금 6개: 재난관리 · 식품진흥 · 자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 옥외광고발전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개 계정으로 운용.

<검토의견>

- ‘기금 수 현황’은 지자체별 기금 수(법정기금 등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함. 파주시의 기금 수 자체는 유형 평균 수준이나, 검토의견 (V-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이 미미한 기금이 다수인바, 기금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개별 기금의 실질 활용도를 기준으로 존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소규모 사업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는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유사목적 기금과의 통·폐합을 포함한 정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도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된 기금에 대해 성과개선 권고(1회) → 재권고(2회) → 통·폐합 권고(3회)의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선제 정비가 바람직함.

VI. 첨부 서류

1. 공유재산관리

- 202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8,87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7% 증가하였음. 증가는 건물과 토지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건설중인재산은 675억 7,800만원 감소하여 준공에 따른 본계정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202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순)
계	9,718,496	429,441	260,621	9,887,316	168,820
토지	6,840,840	82,702	6,590	6,916,953	76,112
건물	986,612	122,901	12,740	1,096,773	110,161
입목죽	34,520	-	-	34,520	-
공작물	1,417,033	46,746	34	1,463,745	46,712
기계기구	44,598	41	-	44,640	41
무체재산	22,426	0	274	22,152	△273
유가증권	51,015	4,000	-	55,015	4,000
용익물권	1,957	7	360	1,604	△353
건설중인재산	319,491	173,041	240,620	251,912	△67,578

2. 물품관리

- 202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2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3억 5,600만원(17.5%) 증가한바, 취득 대비 매각·폐기 비율이 0.7%에 그치고 있어 불용 물품의 적기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검토의견 VI-1·VI-2 참조).

[최근 3년간 물품 보유 현황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회계연도	연도말 수량	연도말 보유액
2023	1,645	16,771
2024	1,837	19,083
2025	1,913	22,439

- 취득은 노트북컴퓨터·미니버스·냉방기 등 구매가 대부분(59개, 33억 2,800만원)인 반면, 처분은 매각 2개를 포함하여 22개·2,512만원에 그침.

[물품 취득·처분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 말	취득				처분				당해 연도말	정수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소계		
수량	1,837	59	34	5	98	2	7	13	22	1,913	1,912
금액	19,083	3,328	43	10	3,381	5	-	19	25	22,439	-

주) 취득 중 ‘기타’는 양여 포함 5개(1,012만원). 처분 관리전환 7개는 장부가액 미계상(0원)으로 결산서에 기재됨.

3. 성인지 결산

- 「지방회계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81개 사업 658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률은 73.5%이며, 미집행액은 174억 100만원으로 편성액의 26.4%에 해당함.
- 사업유형별 집행률은 자치단체특화사업 99.9%, 성평등정책추진사업 98.4%, 기타사업 73.7%, 성별영향평가사업 62.2% 순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집행률이 가장 낮음(검토의견 VI-3 참조).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계(81개 사업)	65,892	48,490	73.5	17,401
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06	4,633	98.4	72
성별영향평가사업	28,881	17,983	62.2	10,898
자치단체특화사업	7,786	7,781	99.9	4
기타사업	24,518	18,092	73.7	6,426

4. 세입·세출외 현금

- 2025회계연도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1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0% 증가하였으며, 보관금이 65.4%를 차지함.
당해연도 중 862억 5,900만원이 들어오고 842억 7,400만원이 나가 연중 자금 흐름은 현재액의 일곱 배를 넘음.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구성비
계	9,405	1,984	11,389	100.0
보증금	74	△6	68	0.6
보관금	6,599	850	7,449	65.4
잡종금 등 기타	2,730	1,140	3,871	34.0

【검토의견 - 첨부 서류】

(Ⅴ-1) 물품 취득가액 등재의 적정성

<현황>

- 2025회계연도 물품 취득액 33억 8,100만원 중 노트북컴퓨터 구매 16개(13억 7,100만원)와 냉방기 구매 3대(6억 2,000만원)가 19억 9,100만원으로 전체 취득액의 58.8%를 차지함.
- 그런데 두 품목의 등재된 취득단가는 노트북컴퓨터 대당 8,569만원, 냉방기 대당 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품목의 취득단가(노트북 128만원, 냉방기 140만원)의 66.6배, 147.2배에 달하고, 기존 보유 물품의 평균 장부가액(대당 218만원, 164만원)과도 큰 격차를 보임.
 -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2025년 신규 취득 16개의 등재가액(13억 7,100만원)이 기존 보유 581개 전체의 장부가액(12억 7,100만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되었음.

[물품별 취득단가 비교]

(단위 : 개, 천원)

품 명	구 분	수량	금액	대당 단가	전년 취득단가 대비
노트북 컴퓨터	2024회계연도 취득	39	50,131	1,285	
	2025회계연도 취득(구매)	16	1,371,183	85,698	66.6배
	2024년도말 보유 평균	581	1,271,622	2,188	
냉방기	2024회계연도 취득	8	11,228	1,403	
	2025회계연도 취득(구매)	3	620,000	206,666	147.2배
	2024년도말 보유 평균	76	125,016	1,645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에 등재된 노트북컴퓨터의 취득단가는 통상적인 시장단가와 현저히 괴리되어 있고, 전년도 같은 품목의 취득단가의 66.6배·147.2배에 이르는바, 이는 일괄 구매 사업의 총사업비(주변장치·소프트웨어·설치비 등 포함)를 대표 품목의 취득가액으로 합산 등재하였거나 수량 또는 금액의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물품 대장의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물품 증감보고서·현재액보고서 작성의 기초일 뿐 아니라, 재무제표상 일반유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재물조사, 물품 대부 시 평가액 산정(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의 기준이 되는바, 부정확한 가액 등재는 물품 관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됨.
- 따라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및 제61조에 따른 재물조정 절차를 통해 해당 품목의 취득 경위와 실제 가액을 확인하여 장부상 수량·가액을 조정하고, 향후 일괄 구매 물품은 개별 물품 단위의 취득원가로 구분 등재하도록 물품관리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결산서 물품보고서상 보유액과 재무제표(일반유형자산 중 기계·기구 및 비품) 계상액 간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Ⅴ-2) 물품 증감현황 표 수량 산정 오류

<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 표에 따르면, 화물트럭(정부물품분류번호 25101611)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8대이며, 당해연도 11대를 신규 취득하고 처분은 없었음.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88대로 기재됨.
- 정수(물품관리대장상 기준 보유수량) 항목 역시 88대로 등재되어 있음.

[물품증감현황 표(화물트럭 부분 발췌)]

(단위 : 개)

연번	품명	⑤정수	⑦구분	⑧전년도말 현재액	⑩취득소계	⑪처분소계	⑫당해연도말 보유액
8	화물트럭	88	수량	78	11	-	88

- 아울러 같은 표에서 제설차(정부물품분류번호 25101926)는 정수가 0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대로 기재됨.

[물품증감현황 표(제설차 부분 발췌)]

(단위 : 개)

연번	품명	⑤정수	⑦구분	⑧전년도말 현재액	⑩취득소계	⑪처분소계	⑫당해연도말 보유액
25	제설차	-	수량	-	1	-	1

<검토의견>

1) 화물트럭 증감 산식 불일치

- 화물트럭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당해연도 취득액을 더하면 89대여야 하나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88대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감 산식이 성립하지 아니함. 정수 역시 정합치인 89대가 아닌 오류값과 동일한 88대로 등재되어 있음.
- 취득란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의 처분이 있었거나 전년도말 또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의 입력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물품 증감현황 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물품 증감보고서·현재액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취득·처분 내역과 기말 보유수량이 산식상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 따라서 정기재물조사 등을 통해 화물트럭의 실제 보유수량과 취득·처분 내역을 재확인하고, 산식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도록 장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설차 정수 미갱신

- 제설차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9호) 별표상 정수관리 대상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대로 기재되어 있고, 정수는 0으로 등재되어 있음.
- 당해연도 중 관리전환으로 1대를 취득하여 보유가 1대로 증가하였음에도 정수가 이를 반영하여 갱신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물품 총괄 표의 정수 합계(1,912개)와 당해연도말 보유액 합계(1,913개)가 1개 차이 나게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규 취득 물품에 대한 정수 갱신 절차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Ⅴ-3) 성인지 예산 집행 저조 및 성과지표 형식화

<현황>

- 성인지 예산 전체 집행률은 73.5%로 같은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90.4%에 비해 16.9%p 낮은 수준임. 특히 성별영향평가사업은 편성액 288억 8,100만원 중 179억 8,3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62.2%에 그쳤고, 미집행액 108억 9,800만원은 전체 성인지 예산 미집행액(174억 100만원)의 62.6%를 차지함.
- 한편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는 88개이며 이 중 30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65.9%에 그쳤음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달성률(B/A)	예산 집행률
88	58	30	65.9	73.5

<검토의견>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편성 단계의 성인지 예산서로 예측한 성별 영향을 집행 결과와 대비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성과지표와 성별 수혜분석은 해당 사업이 성별 격차에 미친 변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총액과 집행률의 보고에 그칠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의 개선은 우리 위원회가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연속하여 주문사항으로 채택한 사항임에도 2025회계연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됨.

① 성별분리통계가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에 성비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

- [과주놀이구름 운영]은 성평등 효과분석의 사업수혜자란에 「성별비율 집계불가」로 명시하였음에도 같은 표의 성비가 3년 연속 여성 49.99%·남성 50.01%로 안분되어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자체평가에 「성별분리통계 미존재」로 기재하였음에도 수혜자는 3개 연도 모두 여성 100%로 계상되어 있음.

② 사업대상자·수혜자를 시 전체 인구로 계상한 경우

- [과주문화재단 운영]은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시민 전체(52만 2,654명)로 계상하고 예산·지출 전액을 인구 성비(여 49.58%·남 50.42%)로 안분하였음. 자체평가는 「과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아 성별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음」이라 기재하고 개선사항은 공란이며, 성과지표는 「성평등 관련 강의 2회」임.
- [관광SNS서포터즈 운영]은 사업대상자를 시민 전체(52만 1,512명)로 잡았으나 실제 수혜자는 서포터즈 15명이며 성과지표는 「성인지 교육 운영 횟수 1회」임.

③ 교육·홍보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은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개 사업은 성과지표가 모두 「리플릿 배포 부수」로서 시술비 지원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홍보물 배포 부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전환사업과 경기형 2개 사업은 목표치·실적치(1,000부→1,400부)와 자체평가 문구까지 완전히 동일함.

④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 달성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 [윤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예산 9억 2,700만원 중 2억 6,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8.7%에 그치고 6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에도, 성과지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횟수 1회」로 목표를 10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⑤ 지표를 교체하거나 목표치·단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 [과주놀이구름 운영]의 성과지표는 2024년 「이용자 수(목표 20만명)」에서 2025년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횟수(목표 2회)」로 교체되어 달성률이 91.3%에서 100%로 상승하였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2024년 「자전거 거치대 설치대수」에서 2025년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대수」로 지표가 교체되고 목표 5대에 실적 30대로 달성률이 600%로 산출된바, 성별과 무관한 시설물 수량을 성인지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성과지표가 「사업수혜자 중 여성 비율」인데 목표치가 337명, 실적치가 111명으로 인원수 기준이어서 달성률이 32.9%로 산출되었으며, 집행부도 자체평가에서 현실적인 달성목표치 설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음.

⑥ 실적치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연도 간 수치가 동일한 경우

-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2개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282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적치란이 공란이고, 성평등 효과분석의 대상자·수혜자·예산·지출도 모두 0이며, 자체재원 사업은 자체평가의 결과 원인·개선사항도 공란이어서 성과 미보고에 해당함.

-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사업대상자 4,379명(여 4,029 · 남 350)이 2023~2025년 3개 연도에 걸쳐 완전히 동일하고 예산의 성별 배분액까지 같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도 대상자 · 수혜자가 3년 내내 60명(여 40 · 남 20)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도 대상자 2,035명 · 수혜자 353명이 2개 연도에 걸쳐 각각 동일함.

○ 성인지 결산이 단순한 집행을 보고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① 성별분리통계가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은 성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말고 미확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할 것.
- ② 사업대상자 · 수혜자를 시 전체 인구로 같음하지 말고 실제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③ 성과지표를 교육 · 홍보물의 실시 횟수나 배포 부수 등 달성이 예정된 형태로 설정하지 말고 성별 격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④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 달성도가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표를 사업 진도와 연계하여 설정할 것.
- ⑤ 목표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지표를 임의로 교체하지 말고 지표와 목표치의 단위를 통일할 것.
- ⑥ 실적치가 공란인 사업은 보완하여 제출하고, 사업대상자 · 수혜자 수치는 매 회계연도 실적으로 갱신하여 작성할 것.

VII. 재무제표

1. 재무제표

-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음.
-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정명회계법인은 2026년 3월 14일자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기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음.
- 2025회계연도말 자산총계는 10조 4,979억 5,100만원, 부채총계는 1,459억 7,500만원, 순자산총계는 10조 3,519억 7,600만원임. 자산총계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485억 5,300만원($\Delta 0.4\%$), 순자산총계는 444억 2,000만원($\Delta 0.4\%$) 각각 감소하였으며, 부채총계도 41억 3,300만원($\Delta 2.7\%$) 감소하였음. 부채비율(부채총계/순자산총계)은 1.4%로 지속 하락하며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운영결과는 227억 1,200만원으로, 2023년 $\Delta 1,420$ 억 7,400만원, 2024년 $\Delta 837$ 억 8,500만원에 이어 처음으로 양(+)의 값, 즉 순원가가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이는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던 구조에서 비용이 수익을 상회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순자산이 444억 2,000만원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증감(25-24)
자산총계	10,497,951	10,546,504	10,020,131	△48,553
부채총계	145,975	150,108	176,794	△4,133
순자산총계	10,351,976	10,396,396	9,843,337	△44,420
부채비율	1.41	1.44	1.79	△0.03%p
재정운영결과	22,712	△83,785	△142,074	106,497

주) 재무제표의 부채비율과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이하 동일).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B)	증감률 (B/A)
	금액	구성비	금액(A)	구성비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0,497,951	-	10,546,504	-	△48,553	-
자산	10,497,951	100.00	10,546,504	100.00	△48,553	△0.4
유동자산	921,078	8.77	984,344	9.33	△63,266	△6.4
투자자산	92,699	0.88	116,397	1.10	△23,698	△20.3
일반유형자산	817,154	7.78	800,484	7.59	16,670	2.0
주민편의시설	3,452,215	32.89	3,395,932	32.20	56,283	1.6
사회기반시설	5,207,859	49.61	5,239,345	49.68	△31,486	△0.6
기타비유동자산	6,946	0.07	10,002	0.10	△3,056	△30.5
부채	145,975	100.00	150,108	100.00	△4,133	△2.7
유동부채	43,084	29.51	39,001	25.98	4,083	10.4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	0.0
기타비유동부채	102,891	70.49	111,107	74.02	△8,216	△7.3
순자산	10,351,976	100.00	10,396,396	100.00	△44,420	△0.4
고정순자산	9,387,047	90.68	9,337,321	89.81	49,726	0.5
특정순자산	188,620	1.82	184,899	1.78	3,721	2.0
일반순자산	776,310	7.50	874,177	8.41	△97,858	△11.1

2. 채권 현재액

- 2025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7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5억 3,000만원, 소멸 10억 1,300만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전년도말 대비 4억 8,200만원(△7.7%) 감소하였음.

[채권 현재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발생 (B)	당해연도 소멸 (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증감
채 권	6,237	530	1,013	5,755	△482

3. 채무관리

- 2025회계연도말 파주시의 채무 현재액은 없으며(전년도말 0원, 당해연도 발행 0원, 상환 0원), 채무부담행위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
- 지방채무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점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누적되는 상황과 함께 고려할 때 필요한 투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검토의견 - 재무제표】

(Ⅶ-1) 재정운영결과 순원가(적자) 전환

<현황>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27억 1,200만원으로, 2023·2024년의 흑자(수익이 비용을 상회) 구조에서 처음으로 양(+)의 순원가(비용이 수익을 상회)가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최근 3년간 재정운영결과 및 재무상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증감(25-24)
재정운영결과	22,712	△83,785	△142,074	106,497
↳ 재정수지 성격	순원가(적자)	흑자	흑자	적자 전환
순자산총계	10,351,976	10,396,396	9,843,337	△44,420
자산총계	10,497,951	10,546,504	10,020,131	△48,553
부채총계	145,975	150,108	176,794	△4,133
부채비율(%)	1.41	1.44	1.79	△0.03%p

주) 재정운영결과는 양(+)의 값은 순원가(적자, 비용>수익), △(음)의 값은 흑자(수익>비용)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27억 1,200만원의 순원가(비용>수익)로, 2023년 △1,420억 7,400만원, 2024년 △837억 8,500만원의 흑자 구조에서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음. 현금주의 결산상으로는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이 지속 발생·누적되고 있음에도 발생주의상으로는 순원가가 발생하는 상반된 결과가 병존하고 있음.
- 이는 발생주의 결산(재무제표)이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도로·상하수도관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재정상태표상 약 5조 2,078억원)의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 비용이 매년 반영되면서 현금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더라도 보유 자산의 가치 감소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투자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자산에 대하여 계속 발생하는 것이므로, 순원가 전환이 투자 부진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산 구성과 사용료 수익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이 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한편 결산서 「재무제표 총괄설명」은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22,71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497백만원 감소”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837억 8,500만원에서 당해연도 227억 1,200만원으로 1,064억 9,700만원 증가한 것임. 양(+)의 값이 적자이므로 값의 증가는 적자 방향으로의 이동인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사실이 서술에 드러나 있지 아니함. 같은 문단에는 수익 총계 금액이 누락된 곳도 있는바(“수익은 총 백만원으로”), 총괄설명이 재정운영결과의 변화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대규모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보다, 순원가 전환의 구체적 원인(감가상각 등 비현금 비용의 증가, 상·하수도 등 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수익, 자산의 이전·매각 여부 등)과 그것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 흐름인지를 함께 분석하여, 현금 기준 결산과 발생주의 기준 결산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Ⅶ-2) 요약재정상태표 표기 오류

<현황>

- 재무제표 요약재정상태표(전체)의 순자산총계 10,351,976(백만원)이 세부항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바, 고정순자산 9,387,047 + 특정순자산 188,620 + 일반순자산 776,319 = 10,351,986(백만원)으로 순자산총계보다 1,000만원 많음.

[결산서 요약재정상태표(발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	⋮	⋮
고정순자산	9,387,047	90.68%	9,337,321	89.81%
특정순자산	188,620	1.82%	184,899	1.78%
일반순자산	776,319	7.50%	874,177	8.41%
순자산총계	10,351,976	100.00%	10,396,396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10,497,951		10,546,504	

[결산서 상 재정상태표(발체)]

[경기 파주시]

(단위 : 원)

과목	해당연도 (2025년)						직전연도 (2024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	⋮	⋮	⋮	⋮	⋮	⋮	⋮
순자산							
I. 고정순자산(주19)	8,024,009,537,475	395,251,393,663	1,480,386,993	966,305,259,854	0	9,387,046,577,985	...
고정순자산	8,024,009,537,475	395,251,393,663	1,480,386,993	966,305,259,854	0	9,387,046,577,985	...
II. 특정순자산(주19)	0	0	188,619,813,068	0	0	188,619,813,068	...
특정순자산	0	0	188,619,813,068	0	0	188,619,813,068	...
III. 일반순자산(주19)	828,653,154,069	17,248,393,444	0	209,617,496,380	-279,209,017,499	776,310,026,394	...
일반순자산	828,653,154,069	17,248,393,444	0	209,617,496,380	-279,209,017,499	776,310,026,394	...
(순자산총계)	8,852,662,691,544	412,499,787,107	190,100,200,061	1,175,922,756,234	-279,209,017,499	10,351,976,417,447	...
(부채와순자산총계)	8,895,252,424,139	412,965,754,727	204,935,886,321	1,278,841,276,693	-294,044,017,499	10,497,951,324,381	...

※ 자산-부채 부분(:) 및 직전연도(2024년) 부분(---)은 생략함.

<검토의견>

- 일반순자산이 재정상태표상 금액과 달리 요약재정상태표에 900만원 과다하게 표기(오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정(776,319 → 776,310)하면 세부항목 합계가 10,351,977(백만원)이 되어 나머지 차이 100만원은 각 항목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 범위 내에서 순자산총계와 일치하게 됨.
-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확정 자료인 만큼, 요약재정상태표의 일반순자산을 재정상태표와 일치하도록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파주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개요

1. 제안 경위

「파주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주요 내용

-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00억원(일반 50억원, 재해·재난목적 50억원)과 기타특별회계 5억 3,538만원이며,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였음. 일반예비비는 0.3%만 지출결정된 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8.1%를 지출결정하였음.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전액 미집행되어 본 승인안에 계상되는 지출 실적이 없음.

[예비비 집행 총괄]

(단위 : 천원)

회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10,000,000	1,926,163	1,493,137	326,810	106,214
일반예비비	5,000,000	18,300	9,970	-	8,329
재해·재난목적	5,000,000	1,907,863	1,483,167	326,810	97,884
기타특별회계	535,381	-	-	-	-
의료급여	35,381	-	-	-	-
폐수처리사업	500,000	-	-	-	-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지출 사유의 타당성 및 시급성

<현황>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9억 2,616만원, 지출액 14억 9,313만원임.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건은 가축질병 긴급방역, 호우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5건이며, 일반예비비 지출건은 강릉시 가뭄 피해 구호품 지원, 경기도 노선버스 파업 비상수송 등 2건임.

[예비비 지출 사업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926,163	1,493,137	326,810	106,214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동물관리과	가축질병 발생 긴급방역	1,528,156	1,388,502	44,863	94,789
	관광과	8.3.~14.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81,947	-	281,947	-
	안전총괄과	8.3.~1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44,940	44,415	-	524
	문화예술과	8.3.~14.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34,197	31,626	-	2,571
	안전총괄과	8.3.~1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자체)	18,623	18,623	-	-
일반 예비비	자치협력과	강릉시 가뭄 피해 구호품 지원	10,000	9,970	-	29
	버스정책과	경기도 노선버스 파업 비상수송 지원	8,300	-	-	8,300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긴급한 지출소요에 대응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 요건(「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별 지출 건의 지출결정 시점·사유가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시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건별 세부명세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4건(3억 7,970만원)은 지출결정 시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근접해 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점이 맞지 아니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재원인바,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에도 7월 호우피해 관련 예비비 6억여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기간(9월 초)과 겹쳐 예비비가 아닌 추경 편성으로 집행이 가능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지출결정 시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대조하여 정규 예산절차로 편성이 가능하였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예비비 지출결정 후 미집행·이월

<현황>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50억원 중 19억 786만원(38.1%)을 지출결정하여 14억 8,316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2,681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5,000,000	1,907,863	1,483,167	326,810	97,884

<검토의견>

-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의 전액 이월이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바, 2024년 관광과 소관 지출결정액 7억 9,297만원 중 7억 3,871만원이 이월된 데 이어, 2025년에도 관광과 소관 지출결정액 2억 8,194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 예비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원으로서 당해연도 내 긴급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재해·재난 대응 예비비는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한바, 지출결정 후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짐.
- 이월된 사유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연도 내 집행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